

의정활동보고서

제234회 정례회(2009. 6. 22 ~ 7. 3)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국내외 정세가 무척 힘겨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도 우수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 현장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만 3,000ha의 동해안 인공어초시설 조성과 미국 E2사의 5,000만 달러 최첨단 정수시설 투자유치, 김천산업단지 착공, 그리고 창의력 개발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등 그동안 도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세 돌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의안과 민원을 처리하고, 의원연찬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정책의회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정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8일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경북구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5조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생태하천 정비, 하천 준설,

보 설치, 수변 레포츠 시설과 자전거도로 개설 등 꿈의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는 중차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최근 경기 하강속도가 둔화되고, 도내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 사업들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기에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지난 48년 동안 해오던 장마 예보를 금년부터 중단 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장마전선 형성 전이나 소멸 후에도 강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른 것으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공사장과 상습 침수지역, 행락철 야영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수방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분명 또 다른 희망과 도약의 기회가 있으며, 그 희망과 도약의 기회는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민을 위한 활기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4
II. 의사일정	6
1. 소 집	6
2. 회 기	6
3. 활 동	7
III. 의안처리	13
IV. 민원처리	14
1. 청 원	14
2. 진 정	14
V. 본회의 보고사항	16
1. 의안 접수사항	16
2. 조례 공포사항	16
3. 위원회 활동사항	17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18
VI. 도정질문	22
VI. 5분 자유발언	69

부 록

□ 조례안	87
□ 결산안	10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4회 정례회는 2009년 6월 22일 11:00 개최하여 7월 3일 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3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22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검사 결과보고,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고우현 의원, 이상용 의원, 김대호 의원, 전찬걸 의원)을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기진 의원, 장세현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6월 24일부터 6월 28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지방세 미수행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청에 대해서도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과다불용처리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권인찬 의원, 김용만 의원, 이현준 의원, 최윤희 의원)을 청취한 후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회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는 7월 3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종원 의원, 손진영 의원, 이상호·박병훈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후 제234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9-9호(2009년 6월 9일)

라. 집회일시 : 2009년 6월 22일(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9년 6월 22일 ~ 7월 3일(12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누계 79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3회 까지	652	36	102	93	95	88	85	96	41	16
234회	13	1	2	2	2	1	2	1	2	
누 계	665	37	104	95	97	89	87	97	43	16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2(월) 11:00 (제1차)	※ 개회식 1.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의원(문경시) ○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 의원(영양군)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호 의원(구미시) ○ 교육환경위원회 전찬걸 의원(울진군)	
6. 23(화) 11:00 (제2차)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성주군) ○ 통상문화위원회 장세헌 의원(포항시)	
6. 29(월) 11:00 (제3차)	1.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3(금) 11:00 (제4차)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2(월) 14:2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4:3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 안전보고 및 조례안 심사 ○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4(수) 11:00 (제2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경제과학진흥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5:0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행정지원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4(수) 11:00 (제2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경북도립대학,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4:3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6. 24(수) 11:00 (제2차)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4:3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5:0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관광산업국	
6. 24(수) 11:00 (제2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투자통상국, 문화체육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0 방콕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계획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3(화) 14:30 (제1차)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도시방재국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소방본부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5(목) 10:30 (제1차)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6(금) 10:30 (제2차)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토론 및 의결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59 (327)	57 (321)	48 (263)	9 (53)	0 (4)	0 (1)	0 (1)	2 (5)	
조 례 안	소 계	42 (198)	40 (193)	32 (153)	8 (36)	0 (3)	0 (1)	0 (1)	2 (4)	
	의회 제안	8 (49)	7 (46)	7 (39)	0 (7)				1 (3)	
	도지사 제출	24 (110)	24 (109)	17 (84)	7 (22)	0 (2)	0 (1)	0 (1)		
	교육감 제출	10 (39)	9 (38)	8 (30)	1 (7)	0 (1)			1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 · 결산		4 (28)	4 (28)	3 (13)	1 (15)					
동의 · 승인		3 (32)	3 (31)	3 (31)					0 (1)	
건의 의 안		1 (5)	1 (5)	1 (5)						
결 의 안		3 (18)	3 (18)	3 (16)	0 (1)	0 (1)				
기 타 안		6 (42)	6 (42)	6 (42)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5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심사유보)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09. 4. 7본회의 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2 (81)	(5)	(8)	(5)	1 (33)	(4)	(2)	(6)	(5)	1 (13)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 (14)			(4)	(3)		(1)			1 (6)
행 정 보 건 복 지	(11)	(4)	(5)							(2)
교 육 환 경	(8)					(4)		(4)		
농수산	(7)							(1)	(5)	(1)
통 상 문 화	(6)		(3)	(1)			(1)	(1)		
건 설 소 방	1 (29)				1 (28)					(1)
특 별 위 원 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81)	2 (81)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 (14)	1 (14)				
행 정 보건복지	(11)	(11)				
교육환경	(8)	(8)				
농 수 산	(7)	(7)				
통상문화	(6)	(6)				
건설소방	1 (29)	1 (29)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6, 기타안 2)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9. 6.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 획 경 제 (2009. 6. 15)
경상북도지사 (2009. 6. 12)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	기 획 경 제 (2009. 6. 15)
경상북도지사 (2009. 6. 12)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 상 문 화 (2009. 6. 15)
경상북도지사 (2009. 6. 12)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2009. 6. 15)
경상북도지사 (2009. 6. 12)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 임 위 (2009. 6. 15)
경상북도교육감 (2009. 6. 1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환 경 (2009. 6. 15)
경상북도교육감 (2009. 6. 12)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 육 환 경 (2009. 6. 15)
윤창욱의원외 12인 (2009. 6. 1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9. 6. 15)

2. 조례공포 사항(8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6. 11 (제3103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	2009. 6. 11 (제3104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9. 6. 11 (제3105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09. 6. 11 (제3106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09. 6. 11 (제3107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6. 11 (제3108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6. 11 (제3109호)
2009. 5.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6. 11 (제3110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2009. 5. 28 (목)	영주,청송, 봉화	• 5. 26발생 우박피해 농가 현장방문 - 피해농가 현장 조사 및 피해농작물 사후관리 지도 등
건설소방 위 원 회	2009. 6. 3 (수)	영덕군청	• 건설기계사업 경영활성화 정책간담회 - 현안사항 토의 및 건의사항 수렴 등 (대한건설협회 경북지회)
독도수호 특 별 위 원 회	2009. 6. 3 ~ 6. 4	강원·경기 도의회 및 교육청	• 우리 땅 독도 바로알기 홍보 - 타 시·도의회 및 교육기관을 통한 독도 바로알기 협조체계 구축
도청이전 지원특별 위 원 회	2009. 6. 8 (월)	안동·예천	• 도청 이전예정지 현지 확인 - 도청 이전예정지 답사 및 현황 청취 - 도청 이전에 관한 지원방안 등 의견수렴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경 제 및 4 대 강 살 리 기 지원특별 위 원 회	2009. 6. 10 (수)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 역 청, 구 미 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경제자유 구역 현장방문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2009년 추진 현황 청취 및 구미디지털산업지구 현장 방문 - 경제자유구역 추진 건의사항 및 지원 방안 협의 ※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발표와 관련한 경상북도의회 입장 발표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 기 간 : 2009. 5. 14 ~ 6. 4(22일간)
- 대 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5.22~6. 4), 도 교육청(5.14~5.21)
- 위 원 : 김응규 부의장 등 9명
 - 도의원 3, 회계사 2, 세무사 2, 재무관리경험자 2

○ 제5회 경상북도교육행정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09. 5. 23(토), 09:30
- 장 소 :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 참 석 :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경상북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9. 5. 27(수), 16:00
- 장 소 : 포항청룡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식
 - 일 시 : 2009. 6. 5(금), 11:00
 - 장 소 : 상주시민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 녹색환경 비전선포식
 - 일 시 : 2009. 6. 5(금), 14: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만용 교육환경부위원장, 도의원
- 2009 경상북도 홀스타인 품평회
 - 일 시 : 2009. 6. 5(금), 14: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김천일반산업단지 기공식
 - 일 시 : 2009. 6. 5(금), 16:00
 - 장 소 : 김천시 어모면 남리 일원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제54회 현충일 기념식
 - 일 시 : 2009. 6. 6(토), 09:50
 - 장 소 : 안동 충혼탑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2회 골든 애플컵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
 - 일 시 : 2009. 6. 7(일), 16:00
 - 장 소 : 영천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경북 파트너쉽 협의회
 - 일 시 : 2009. 6. 8(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재철 통상문화부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 일 시 : 2009. 6. 11(목), 14:00
 - 장 소 : 대구엑스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09. 6. 11(목),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도의원
- 제12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테스트대회
 - 일 시 : 2009. 6. 13(토), 10:0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테니스장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전국농공단지 비전스타트 2009 및 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9. 6. 15(월), 11:00
 - 장 소 : 영천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2기 새경북위원회 출범식 및 신발전구상 발표회
 - 일 시 : 2009. 6. 17(수), 10:3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개소식
 - 일 시 : 2009. 6. 17(수), 15:00
 - 장 소 : 서울역 4층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 민속문화의 해 보고회
 - 일 시 : 2009. 6. 17(수), 16:00
 - 장 소 : 문화엑스포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독도수호! 『안용복 재단』 출범식
 - 일 시 : 2009. 6. 18(목), 11:00
 - 장 소 :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응규 부의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정무웅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도의원
- 『동경주로타리클럽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09. 6. 18(목), 18:30
 - 장 소 : 경주힐튼호텔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의회방문
 - 일 시 : 2009. 6. 19(금), 11:4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경북전통음식 한마당
 - 일 시 : 2009. 6. 20(토), 10:00
 - 장 소 : 안동체육관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경상북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 일 시 : 2009. 6. 20(토) 11:00
 - 장 소 : 경주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V. 도정질문

□ 2009년 6월 22일(월) 제23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고우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정례회 첫 번째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부자경복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용 지사님과 교육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북한의 2차 핵실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4월11일 국방부에서는 서울 송파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지로 문경시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이전사업자 지정승인과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기공식을 거행하며 2011년 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 이전 체육부대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며칠 전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민은 그동안 국군체육부대 이전이 문경으로 확정되면서 희망과 설렘으로 지내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신문보도 소식에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도 갑작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18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운용 종목을 2014년까지 현행 25개에서 5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야구, 축구, 농구, 럭

비, 레슬링 등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전투부대의 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육상, 수영, 태권도, 사격,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원병력을 합해 600여명 수준인 운영 인력도 150여명으로 줄어든다 합니다. 국방부는 1차로 2011년~2012년 운영 종목과 인력을 각각 11개 종목 260여명으로 줄인데 이어 2013~2014년에 5개 종목 150여명으로 축소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육부대를 국가 엘리트선수 육성 업무에서 기초체육과 군특성에 부합하는 종목 위주로 운영해 국방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비전투부대의 조직 슬림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체육부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국방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체육부대를 해체해 선수촌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2011년 경북 문경으로 이전하는 체육부대의 운용 종목이 줄어들면 이전부대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축구 등 인기종목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군복무 인정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경기장 시설은 국제규격에 맞게 갖춰져야만 합니다. 학교시설처럼 운동만 할 수 있도록 건설하게 되면 국내경기는 물론 합숙 전지훈련도 오지 않습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야 국내·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스포츠 도시로서 문경시의 발전과 경상북도의 위상도 향상될 것입니다. 신문보도 내용대로 된다면 '90년 초 폐광 이후 국군체육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증가 등 살기 좋은 문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148만m²의 옥토만 버리는 쓸모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사께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있을 제6회 세계군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문경시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회 대회인 경우 132개국 선수단과 임원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유치가 되면 문경시와 인접 시·군, 경상북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이한성 국회의원과 신현국 문경시

장이 세계군인체육연맹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방문하여 유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성 국회의원도 금명간 군인체육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계획과 지사께서 직접 유치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된 지 28년,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청이전 문제가 민선4기 김관용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현재 도청 이전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도민 모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과 도청 이전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1년 전인 2008년6월 9일 도청이전 예정지가 지정 공고되었으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3월9일 제정됨으로써 인구 10만명 이상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1만 2,347km²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12만 7,000m² 규모의 신청사 건물을 지어서 2013년도에 도청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는 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제도에 관한 사항과 개발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를 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며칠 전에 서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그리고 각종단체의 이전문제, 이주민에 대한 대책 등 중요한 사항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편성은커녕 금년도 확보한 국비예산 100억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또다시 도청이전이 물거품이 되지 않나 염려하는 도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도지사께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도 당

초 추진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만약 도청이전 추진 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확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여러 시·군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마다 이전에 따른 부지·시설 등을 제공하겠다는지 또는 자기 시·군이 최적지라는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전을 희망하는 시·군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186개의 유관기관과 각종단체 중에서 도청과 동시에 이전하여야 할 기관이 7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각종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전되어야 주거건물과 상가가 형성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구도 유입되어 신도시 건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허벌판에 도청건물만 덩그렇게 서 가지고는 본래의 도청이전 신도시 형성계획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봅니다.

이전대상 유관기관 중 일부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만 도청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우리기관이 이전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을뿐더러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지사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하반기에 이주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몇 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타지로 이전해야 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사전 지원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시·군마다 특산물, 민속놀이 등을

통한 지방 알리기와 낙후된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2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1년에 930여개나 되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94년에는 260여개에 머물렀던 축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축제의 사업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이나 이벤트 행사용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6년도에 축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15개의 축제를 69개로 통폐합하여 35개의 지역축제를 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군 또는 읍·면·동 축제를 포함하면 몇 백 개는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많은 선심성 예산만 증가되어 혈세만 낭비시킨다고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여 통폐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2008년도 지역축제 예산을 보면 총 170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 금액이 156억원으로 91.3%에 달하고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은 14억원인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항의 국제불꽃축제에 포스코가 10억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축제가 행정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 주도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축제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다 보니 정형화된 틀 속에서 주제만 다르고 내용이나 형식은 비슷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외부 관람객이 적을 것을 우려하여 타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강제 할당시키고 지역주민을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웃지 못 할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계획할 때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의 기획의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사업계획서를 1년 전 제출받아 사업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는 축제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등 난립을 막기 위해서 조례 등 규제법령을 만들어야 하겠으며, 지역의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 하는 등 1개 시군에 한두 개 축제를 만들어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91개교, 특수학교 5개교, 각종 학교 1개교 등 100개 법인, 175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전체 977개 학교의 18%를 차지하는 등 후학 양성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정현황 결산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그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2008년도 사립학교 결산결과를 보면 총 지출액 5,991억원이었으며 자체 수입현황으로는 수입자 부담경비 862억원, 학교운영 지원비 180억원, 수업료 및 입학금 등 400억원, 기타 10억원 등이며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재정결합보조금으로 3,355억원, 시·도 보조비로 124억원, 시설사업비 등 운영비로 835억원을 보조하여 총 4,3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은 총 173억원 중 16%인 27억원만 실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과 2006년의 경우도 2008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법정부담금 납부현황도 2006년 22억원, 2007년 24억원 등 총 법정부담금 대비 고작 14~15% 정도입니다.

이러하듯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 지원예산은 2006년도 3,689억원, 2007년 3,874억원, 2008년 4,322억원 등 매년 폭발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외 두 곳, 포항제철중학교, 문경여자고등학교 외 7개 학교 등 총 12개 학교가 100% 납부한 반면, 포항 모 중학교, 고등학교, 구미 모 중학교 등 3개 학교는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60%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운동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학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투명하지 않은 회계구조, 재산증식 등 비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례에 젖어 내려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가진다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정부담금 문제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단골로 등장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학교나 100% 완납한 학교나 예산지원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모범사학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등으로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납부율을 향상시킬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단순 논리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2일(월) 제23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이상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경북의 젖줄이자 생명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각도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경북도도 상수원보호와 수계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02년1월에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개선여지가 없으며, 수계관리를 위한 기금의 사용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의 금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총 1,969억 4,300만원으로 토지매수사업이 전체기금의 30%에 달하고, 나머지 70%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계관리기금이 토지매수에 치중되면서 경북도의 청송군과 영양군 같은 농촌지역은 오히려 공동화와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대상이 된 이 지역들은 인구유출과 지역경기 침체 등 황폐화 현상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수된 농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여 야생 조수와 병해충의 서식지로 변하여 인근 농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계기금의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매수사업비율을 줄여나가는 대신 수질개선의 직접적이고 확실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의 지원혜택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에 의한 혜택이 더 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영양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양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예산을 2007년도에 9억 6,000만원, 2008년도에 7억 1,000만원, 2009년도에 7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시다라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전기료, 상수도료)는 일반지원사업비총액의 10%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양군의 경우에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3억원의 인센티브까지 지원받은 바 있는 주민복지회관건립사업의 경우 동 건물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원사업비의 10%이내의 보조금과 자체수입금과 군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연료비와 상수도요금, 관리인건비 등이 모자라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의 목욕탕 가동을 중단하는 등 운영에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영양의 예에서 보듯 주민지원사업의 취지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목욕탕은 경제적 타산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현재의 10%에서 4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상향이 어렵다면 주민공동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등 일부 사업만이라도 운영비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물이용을 명분으로 다목적댐 등의 건설이 이루어졌지만 수자원 개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댐 건설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조차 막대한 자원이 수몰되고 수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어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안동댐 143억원 등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등 총 24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수의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불편,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심리적 피해인식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12월에 우리 경북도와 강원도, 충청도의 3개 도에서 공동 연구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에서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인식도가 강원도 46.9%, 충청북도 44.1%, 경상북도 52.3%로 나타나 경북의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인식에서도 강원도 35.7%, 충북도 37.7%에 비해 경북은 45%로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기타 도에 비해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도 마을구판장, 마을회관, 농기계수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주로 공공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될 뿐 지역정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으로써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하에 경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3개 도는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지역 낙후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위하여 지난 1년간 3개 도의 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지속가능 발전 특별법』 제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속가능 발전 특별법』은 2008년11월26일 허 천의원님의 발의로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및 각종 출연금 등의 재원확보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경북도의 경우 댐 주변지역 면적 총 1,114.2km²에 총 2만여명의 주민이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이나 재산상의 불이익 및 주민불편에서 벗어나 지원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댐 주변지역에 대한 일회성 내지 소모성 사업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체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댐 주변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바 현재 도 차원에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동강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만 무려 2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로 경북내륙을 관통하는 낙동강 정비에는 9조 8,000여억원의 본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으며, 공사는 일괄수주방식인 턴킨공사 17개와 일반공사 22개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공사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간에 집중적인 수

주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낙동강전투라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동 사업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정비사업이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일반공사와 턴키에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각각 40%와 20%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경북도는 각각 70%와 50%로 상향 조정하고 댐 건설비를 제외한 공사비 가운데 50% 이상인 1조 8,000억원을 경북도에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의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대기업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나 50%이상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금호강과 같은 낙동강 지류사업의 발주 권한도 경북도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12개 사업 중 공원조성이 6곳, 탐방로 조성이 2곳, 박물관 건립이 2곳, 관광 및 체험시설이 2곳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공원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낙동강프로젝트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낙동강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각 시·군의 사업들 간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트레킹코스, MTB코스, 박물관 등이 상호 연계 없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를 시·군의 사업이라고 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경북기획단 등에서 각 시·군의 사업들이 상호 큰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치솟는 비료, 농약, 사료비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농촌인력의 극감 등으로 인한 영농환경이 점차

어려워져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악화에 따른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제도』를 2006년1월부터 시행하여 비농업인 또는 자경이 어려운 사람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창업농 등에 임대해 농가경영규모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과 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해당농지를 농가에 재 임대해 주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비농업인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면할 수 있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매도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농가부채액이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지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 농업인이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농가부채의 경감을 목적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른 융통성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인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사업대상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한 후 임대하여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농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다시 농지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에 따른 각종 세제가 환급,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귀농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의 농촌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북의 농촌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에 우리 경북도로 귀농인구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은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해버린 경북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귀농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귀농인구는 시·도별로 경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땅값 등의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귀농자들이 몰려 전체 20%를 넘고 있어 귀농 일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다양한 귀농지원책을 통하여 귀농인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귀농정착자금과 주택구입비,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귀농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유치 및 정착을 돕고 있으며, 도내 시군들도 귀농조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택수리, 귀농학교 수강료, 농지구입, 귀농인 이사비용,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자들은 자금부족과 농지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나 세제혜택, 특히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없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농민의 경우에는 토지매입 시 취득세의 5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이 매입할 시에는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귀농인들이 농지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영농동기도 부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귀농인이 실제 농업에 제대로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나 귀농인들을 지역농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민과의 세제상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귀농인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자금 등의 융자혜택과 시설비용 등의 지원과 함께 더욱 실질적인 귀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폭적인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농어촌 중심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정주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교육 문제의 해결은 농어촌 회생과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공동과제이자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해 올해 들어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대상으로 초등학교 202개교, 중등 89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297개교로 전체 1,070개교의 27.8%에 달하고, 학생수 감소로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학교수는 무려 93개교에 달하고 있어 지금 경북의 농어촌 학교들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도차원에서 지역중심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농산어촌 우수고, 기숙형 공립고 등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사업의 경우 도 본청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 시에는 3년에 걸쳐 도내 5개 학교 정도를 지역중심학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했으나 선정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 2008년도에는 지역 19개 시·군의 학교에서 각 5,000만원 정도 지원받았고, 2009년도에는 23개 시·군에 약 4,300원씩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실제 각 학교별로 4, 5천만원씩 지원받아서 당초에 의도한 지역 우수학생들의 유치와 학습효과 제고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그 지원된 만큼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들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평가기준에 미달된 학교들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총 13개 학교당 16억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울진고, 영양고, 영덕고 등은 인구전출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수가 감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위여고의 경우 농어촌 우수고 선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일자로 폐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운영의 내실화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재 경북도내의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총 13개교 중 기존사업인 농산어촌 우수고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는 고등학교는 총 8개교로 전체의 6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된 8개교는 이전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기숙형 공립고 사업에서 또한 각 학교당 38억원 정도 지원을 또 받게 되어 총 5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복투자나 과잉투자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지역내 지원받지 못한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중심학교 사업,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 모두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의 심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사업들입니다만 오히려 학생수의 감소, 운영상의 비효율과 함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내의 교육격차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농어촌 학교의 학생 감소방지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2일(월) 제23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대호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이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현 시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 등 정치·군사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우리 경상북도민의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쌀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2008년말을 기준으로 쌀 생산량은 65만 8,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4월말 현재 쌀 재고

량은 8만톤으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5%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고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쌀 풍작과 소비 감소, 수입물량 증가, 대북식량 지원 중단이 주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에 136.4kg이던 것이 2008년에 75.8kg으로 44.4%인 60.6kg이 줄었습니다. 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과 이로 인한 국민의 식생활습관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친환경 인증 규모를 보면 2006년에 1만 3,378호의 1만 1,597ha에서 2008년에 2만 754호의 1만 9,967ha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출하량도 26만톤에서 48만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서 경북도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들판 조성을 위하여 우렁이와 쌀겨, 유기질과 게르마늄 및 맥반석, 오리와 미생물, 활성탄, 멀칭 농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23개 사업에 74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생산량 증대와 친환경품질 인증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도 지정 브랜드 쌀을 선정·발표하고 있는 바, 금년의 경우 고령 옥미, 상주 풍년쌀골드, 안동 양반쌀, 의성 황토쌀, 상주 금방아, 구미 흑두루미 쌀을 브랜드 쌀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브랜드 쌀을 다시 농식품부에 추천하여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현재 도내 논유형을 보면 전체 면적 14만 6,000ha 가운데 보통답이 5만 2,000ha, 사질답이 4만ha, 미숙답이 4만 3,000ha, 습답이 9,000ha, 염해답이 461ha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질답은 점토와 유기질이 적고, 미숙답은 토층 단면의 발달이 적고 단단하여 빠 뿌리 신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습답은 배수가 불량하고, 염해답은 염분 집적이 많은 논으로 이것을

모두 합치면 전체 면적의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속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 즉 맛이 개선되지 않아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경북도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미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객토사업은 1999년에 6,145ha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4년 1,405ha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객토사업은 흙의 성질을 개선하여 양분보존력이 커져 생산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쌀의 품질향상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수준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논의 유형에 따라 객토사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시책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본 의원의 주장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최근 5년간의 우수 브랜드 쌀 선정내용을 보면 전남의 경우는 매년 4~5개의 브랜드가 선정되고, 전북도 3개의 브랜드 쌀이 선정되는 반면에, 경북도는 겨우 1개의 브랜드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5개이상의 브랜드 쌀을 선정하여 추천을 하여도 전국적인 브랜드 쌀에는 1개의 브랜드가 선정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남·북의 쌀만큼 맛이 없거나 미질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비교하여 보면, 2004년에는 친환경 농가호수와 면적, 출하량에서 모두 앞섰으나, 2006년부터는 뒤쳐지기 시작하여 2008년말을 기준으로 농가호수와 면적은 전남의 20% 수준에 있고, 출하량은 절반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은 개별농가 차원을 넘어 도농정이 시·군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토를 위한 황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생산되는 쌀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토사업 추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북도 차원의 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83개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구조는 일반적인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유통구조이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도내의 목조문화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인간의 역사적 삶의 가치와 연관되는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밥이라면, 문화와 문화재는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보 제1호인 숭례문 방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숭례문 화재는 당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숭례문 복원에 사용할 목재를 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산야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40여년 동안의 조림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울창하게 조성되었으나 정작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목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년1월 현재 전체 151개의 국보와 보물 중 26.5%에 해당하는 40개의 목조 문화재가 도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목조 중요민속자료 5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 지정 목조문화재 237개(기념물 3개, 유형문화재 122개, 민속자료 112개)와 문화재 자료 37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목조 문화재는 가장 오래된 문화재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사찰과 고택, 정자 등으로 석조 문화재와는 달리 세월이 흐르면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재 복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몇 년 만에, 단기간에 자라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조림사업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에서는 빨리 성장하여 쉽게 소비되는 나무를 중심으

로 조림하여 문화재 복원용처럼 장기간의 조림기간을 거치는 나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복원용 목재의 경우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300년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은 향후 문화재를 후손에게 보존할 수 있는 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목조건축 문화재 기둥에 사용되는 부재(재료)의 수종을 보면 시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건축 문화재에 대한 구성 수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려시대에 건립된 문화재의 기둥에는 느티나무가 55%로 소나무 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소나무가 기둥 부재의 주재료를 차지하고, 조선 후기에는 더욱 두드러져 대부분의 기둥에 소나무를 사용하여 오늘날 소나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려시대 이전에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내구성이 높은 느티나무가 목조건축물 기둥의 주 수종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느티나무의 자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소나무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 건축물의 보수나 복원을 위해서는 느티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에 적합하나 현재 우리나라 산야에서는 느티나무 가운데 문화재의 기둥으로 사용할 나무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가로수나 그늘용으로 식재하다 보니 문화재 복원이나 보수용으로 사용할 나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역사적 목조건축물 보존 원칙에 의하면 구성재는 동일한 수종의 목재, 기존 구성재와 같은 물질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건축된 목조 건축물은 느티나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보수하는 목재는 느티나무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야에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에서는 문화재의 기둥으로 사용할 만큼 큰 재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괴목’이라고도 하는 명목 느티나무, 고급용재 자원을 확보하여 우리의 찬란한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느티나무 심기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도 문화재 보수용으로 소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조 건축 문화재가 많은 경북도는 목조 건축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을 위한 나무에 대한 조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북도에서는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용 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정책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점점 가속화되는 지식경제기반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정보와 창의성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금년 4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법안 통과 시 지역의 특구지정 등을 위한 추진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안은 조기유학의 급증, 외국어 교원 자질 시비, 사교육의 심화 등 초·중등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대학의 국제화 수준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형 국제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강화, 외국대학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특구의 지정은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교육력 강화, 교육국제화 및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교육산업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적 정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2~3곳의 교육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10년간 2조원 이상 정도가 투자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더불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경북이 지닌 이미지와 여건, 잠재력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육도시’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많은 우수 인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은 포항고, 경주고, 구미고, 김천고, 안동고 등 전국적인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명문고등학교가 시·군별로 있으며, 구미와 칠곡, 안동은 평행학습도시를 구축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되어 약 2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의 세계적인 포스텍을 비롯하여, 경산 학원도시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명문사립대학교, 구미 금오공대와 안동대학 등 국립대학들이 각각 IT, BT, NT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특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연차별 교육계획수립,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학교의 설립, 외국인 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금 조성 등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과연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이에 대한 정책 및 대안마련 등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북도와 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원자력 연구원, 한국뇌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볼 때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로 인해 과연 경북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

다.

대구시에서는 교육특구지정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와 교육청에서 최소한 법률안 제정에 대비하여 교육특구지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교육특구 모델 마련 등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2일(월) 제23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울산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와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산불피해가 많았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초속 7m 이상의 강한 돌풍도 자주 불어와 산불피해를 더 키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 4월 중순까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87건으로 피해면적은 160ha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산불 건수의 23%, 산불 피해면적의 37%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산불 건수 44건, 피해면적 44ha, 2007년 60건에 63ha, 2008년 77건에 52ha와 비교하면 금년 봄에만 발생한 도내 산불은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오랜 가뭄에 따른 산불피해는 천재에 따른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산불피해를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경북지역의 산림을 유형별로 보면 내화수종인 삼나무 같은 활엽수보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산불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조림한 수종별 현황을 보면 침엽수가 549ha이고 활엽수가 208ha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침엽수(336ha)를 활엽수(77ha)의 4.4배나 더 많이 조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화수종인 활엽수는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불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데 비해 침엽수는 잎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 하단부에는 내화수종인 속성경제수림이나 활엽수림을 심어 산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단부에는 침엽수림을 심어 송이 등 주민소득사업이 되도록 하면서 산불피해도 줄이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원인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화는 총 17건으로 이중 14건이 61세 이상 노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지노미야시 불 농기에 관한 조례」는 논두렁·밭두렁 소각 시 반드시 사전허가제를 실시하여 불농기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임야면적이 많은 우리 경북도에서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논두렁·밭두렁 소각에 대한 주민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과 구급차량 배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력확보와 2부제 근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하던 119지역대 통폐합을 작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총 65개소인 54%의 119대기소를 통·폐합하였으며 92명의 소방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3부제 근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배치된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는 한 조가 3명이고 3개조 9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1명 포함되어 소방차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를 배치하는 곳은 농·산촌지역으로 그 지역의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이 많으며 젊은이가 있다 해도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 등을 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는 임금이 적어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기존의 소방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1회 4시간 이상 출동한 대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으로써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3,100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일 근무 시 33만 1,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요원은 일당 3만 6,500원에 월 평균 90만원, 일자리 창출 관련 공공근로자는 일당 3만 6,000원에 월 평균 86만원, 청년인턴은 일당 3만 8,000원에 월 평균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너무나 대조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농촌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과 현장의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워 허울 좋은 제도로 전락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전담의용소방대원 9명의 수당을 산불감시요원이나 공공근로자의 수당 정도로 조정하여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지역대가 철수된 지역은 농·산촌으로써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집성부락의 주민들과 거주거리도 멀어 응급환자 발생 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19지역대 철수와 동시에 구급차량도 함께 철수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수송이 전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119구급차량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일만 연안 오염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연구단체 중 해양환경연구회 회원 7명은 지난해 8월26일부터 27일 양일간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일만 연안 일대, 포스코 신항 내부, 담수역인 형산강, 냉천, 죽도시장 등 일대에 걸쳐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현지 조사했습니다.

한때 영일만은 청정수역을 자랑하였고 북부, 송도, 도구, 흥환해수욕장 등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였습니다. 도의회 산하 해양환경연구회 조사팀은 해수 수온의 높고 낮은 정도, 중금속 검출량, 플랑크톤 종조성과 생태계 지수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첫째, 영일만은 죽도시장의 수산부산물과 수산물 세척 등의 오수와 생활오수, 육상의 산업 오·폐수와 생활오수가 형산강 하구와 주택, 포스코 등 공장

인접 지역에 방류되고 있어서 냉천수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외만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자정작용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COD에 의한 해역의 수질은 과거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포스코 내항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롬과 철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표층의 수온은 저하되고 있으며 냉각수, 폐슬러지와 매립지 침출수 등으로 인해 영일만 일대의 수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6가 크롬, 구리와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6가 크롬은 납, 수은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중금속에 속하며 맹독성으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 궤양을 일으키고 체내에 들어가면 복통과 빈혈, 간장 장애, 심지어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양이 검출되었으나 6가 크롬이 해수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영일만 연안해역이 산업 오·폐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카드뮴 역시 해역환경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 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유해 금속으로써 해수에서 검출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일만 주변 수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 산하 연구회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 대책은 거의 전무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일만 연안 주변의 해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일만 일대의 산업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비롯하여 매립지의 침출수, 폐슬러지와 각종 방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 신규임용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가급적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경상북도 내 지역 교육청별 신규교사 발령 현황을 보면 신규교사들의 배치 비율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등교사의 신규임용교사 배치현황에서 5년 넘게 신규교사 발령비율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지역으로는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은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30~40%를 넘습니다. 특히 울진의 경우를 보면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2005년 61%, 2006년 49%, 2007년 72%, 2008년 66%, 2009년 52%였습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 교사를 배치하는데 10명 중 6~7명을 신규교사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공립형기숙사를 만들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학습전달 매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교사의 편중현상은 학생들의 지도에도 문제를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습 분위기와 연결되어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학부모나 지역 동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신규임용교사 배치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사랑과 배려로써 도정과 교육환경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넉넉하며 산수가 청명하고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3일(화) 제234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박기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300만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 ~ 성주간 경전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공동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에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1월 시·도 경제통합추진조례 제정 등을 시발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2일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는 경제통합과제로 광역전철망 구축 등을 비롯한 29개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권광역전철망사업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구도시철도와 연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구지하철 2호선 동편 영남대 구간공사가 2007년 6월부터 진행 중이기도 하며 대구지하철 2호선의 서편 문양역에서 성주읍까지의 17.7km의 연장계획 건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및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매우 미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구와 성주군의 교통통합으로 하나의 도시

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프라의 실현, 그리고 실질적인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 ~ 성주간 경전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2호선이 문양과 성주를 이어 더 나아가 김천·구미 KTX역까지 건설되면 대구인구 260여만명 중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등지의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약 150만명과 김천, 구미 인구 50여만명을 합해 200여만명이 김천·구미 KTX역을 이용할 것이 예상되어 가장 성공적인 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철도의 경유지역인 하빈-선남-성주-초전-김천 혁신도시에 하나의 도농복합 광역전원도시벨트화가 형성되어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 서남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혁신적인 동반발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더불어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서 지역발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선(김천~성주~고령~진주) 철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미래 녹색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부내륙(김천~진주)철도의 조기건설을 촉구함은 물론 경북의 서남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경부선, 경북선, 경전철 등과 연계, 중부내륙철도 이용객의 효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선 철도사업 조기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천, 고령, 성주의 도의원과 지역주민대표들이 강력히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9일에는 김천시에서 관계 시군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적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검토대상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김천·구미 KTX역사 건설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때에, 김진선 철도사업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계획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이용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선」 성주읍~초전면~김천 남면까지의 4차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천·구미 KTX역사가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혁신도시와 KTX역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너지효과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사회간접 자본시설, 특히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성주읍~초전면~김천 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선을 현재의 2차로에서 4차로로 조기에 확·포장하는 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성주지방공단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구미 KTX역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지금까지 「경상북도지방도 장기계획」에 2011년 이후 검토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있었으나, 본 의원의 2007년말 제219회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3월에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단기사업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주읍 예산리에서 초전면을 거쳐 김천시 남면 부상리까지 연결하는 19.5km에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도정에 제기한 성과이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준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천 혁신도시와 KTX역사 준공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은 공무원교육원의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열악한 환경과 시대적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보다 다양한 효율적 운용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하루빨리 최적지로 이전하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기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도가 이러한 논의에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군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청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 대구에 소재한 경북도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은 신도청소재지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기관의 특성이나 기능,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고유의 특성과 균형발전 및 지역안배의 명분을 확보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이미 성주군은 2008년6월3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3월10일에는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의 현장 확인과 아울러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교육원 이전의 당위성과 함께 시·군의 유치노력이 거듭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의 이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대구시공무원교육원과 연

계해서 추진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의 위치는 대구근교권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성주군은 대구와 경산의 대학 및 강사 인력Pool의 활용이 용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왜관~성주~고령 간 국도 30호선 4차로 확장 등을 통한 교통의 요지로서 연구자 및 강사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 중턱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이전문제를 방치할수록 유치과열로 치닫게 되어 지역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루빨리 대구시와 협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모두 20개소로 우리 경북도내에는 천년고도 경주를 비롯하여 가야산과 속리산, 소백산 그리고 주왕산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처음부터 공원구역 지정이 잘못 이루어진 가야산 국립공원 등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가야산은 본 의원이 제219회 도정질문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 사항과 같이 1972년도 지정 당시 경계부위에 공원으로 묶인 수륜면 백운리를 비롯하여 봉양리와 가천면 법전리 등의 거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지나친 불편은 물론 사유권행사 제한 등 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2003년8월 공원구역 재조정이 있었지만 미 반영된 가천면 법전리, 마수리, 수륜면 봉양리, 신평리, 백운리 등의 320ha는 여전히 불합리한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1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자연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합리하게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은 사유권 행사가 지극히 제약되는 등 성주군 관내에서도 최오지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보상차원에서라도 구역조정이 하루빨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도차원의 주민의견 수렴 및 실사 등 구역조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결과 경북도의 극심한 성적부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16개 광역시·도중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5개 학년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5개 영역별 수능성적 1~4등급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 경북도는 경주시만 유일하게 2006학년도에 언어영역 19위, 수리 나영역 20위, 외국어영역 17위, 그리고 2008학년도에 역시 경주시만 언어영역 20위로 전국 20위권 내에 포함되었을 뿐, 2005학년도, 2007학년도, 2009학년도에는 우리 도의 어떤 시·군도 어떤 영역에서도 전국 2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결과로 나타난 우리 경북교육의 현주소는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성적은 최종적으로 학교를 통해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분명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수준 등의 지역환경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이라 할지라도 좋은 성취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5개 학년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위 시·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경북도의 교육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미흡했었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경북교육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및 불교, 유교 등 3대 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은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영남의 영산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적 식생과 동물자원, 가야산 유역에 남아있는 가야문화와 불교·유교의 3대 문화권의 유적과 자원을 골고루 갖춘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축소판이자 문화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현재 3대 문화자원의 특질을 반영한 가야산 권역의 문화관광 기반조성 및 자원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을 통해 문화관광·산업개발·정주권기반의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지역의 경우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불교와 유교의 3대문화권의 문화유적과 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문화관광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야문화권 개발은 고령중심, 불교문화권 개발은 경주중심, 유교문화권 개발은 안동 및 북부지역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중 경북권역에 국한 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성주와 고령은 같은 가야문화권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의 경우 총사업비가 3,108억 8,100만원으로 경북권역사업의 61.1%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성주군의 경우에는 1,975억 1,600만원으로 3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불교문화권, 유교문화권 등 3대 역사문화권 개발사업은 도차원에서 균형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관리대책과 성주댐 준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부족하여 영농철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수량이 6월3일 현재 평년 276mm에 크게 미달되는

225.2mm이고 저수율도 평년 80.7%보다 약 24% 적은 56.8%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용수부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벼농사를 비롯한 과수, 채소농업 등 모든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에 평소에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주댐의 경우에는 6월3일 현재 저수율이 26.6%로서 평년 64.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수량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주댐은 1997년도에 건설된 이래 댐내 퇴사토가 쌓여 전체 가능담수량이 크게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기시 상류지역에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준설작업이 시급하며 준설시 발생하는 골재를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약간의 가뭄에도 용수걱정을 해야 하는 현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주댐을 포함한 도내 농업용저수지의 준설계획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불합치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지적 불합치 또는 지적 불부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 불부합은 단순한 불일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의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12월31일 현재 1만 3,462필지에 2만 9,5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포항 남구와 북구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거의 이루어졌고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의 경우에도 국비보조를 통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주군을 비롯한, 군위, 의성, 고령,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에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부합지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이 해소할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도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분할 및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주군의 경우,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는 197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측에서는 학교 앞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성주군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지적 불 부합지라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토지분할을 할 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보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관할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청(성주교육청)에서는 보상이 없으면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측과 학생,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로에 편입된 학교용지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향후, 지적 불 부합지가 해소가 되면, 미 보상된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차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9년 6월 23일(화) 제234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장세헌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11월27일 제211회 정례회와 2009년5월11일 23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새마을운동과 그 운동에 대한 발상지에 대하여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이어 한 가지 사안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인 새마을운동이 올바르게 역사에 기록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그 민족의 지도자는 자기의 민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고 박정희대통령께서도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이 메아리가 되고 울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온 힘과 혼을 다하여 불어넣은 이 운동이 새마을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 운동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1971년9월17일 전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모이게 하여 민족의 혼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며, 횃불을 처음 당기는 점화역할을 하였고, 여기서 영상물을 남기고 기록하고 그리고 훈장과 포장을 지급하였으므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이제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9일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최진근 원장님과,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근 위원님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늦게나마 기계면 문성리의 이석걸님과 홍선표 어른의 증언을 충분히 이제는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40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든 기계면 문성리까지 박대통령께서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를 대동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난 40여년전의 일들을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새마을운동의 주역이신 당시 기계면 문성리 주민인 이석걸님과 홍선표 어른의 증언과 포장, 그리고 상장, 그리고 새마을가꾸기사업 마을 상패는 5,000년 역사의 가난했던 세월을 다시는 잊지 말자는 선조들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는 당시 기계면 문성리에 방문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고하신 원본입니다. 이 원본의 책자를 지사님과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책자 전달)

40년 전의 책자라서 많이 낡고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여기서 지난 40년 전에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당시 기록과 사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판을 보며 설명)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 유공자 훈·포장 수여 장면입니다.

위층 상단의 좌측입니다.

1971년7월30일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각 시·도에 1명씩 선발한 경상북도의 대표입니다. 이석걸 어른입니다. 가운데입니다. 1971년8월5일 경제기획원 회의실입니다. 7월 월례회 경제동향보고회에서 당시 영일군수 박준무 씨, 그리고 그 옆은 기계면 문성리 이장 홍선표 씨가 근정

포장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래쪽 하단 좌측입니다.

박대통령께서 시장·군수, 도지사, 경찰서장까지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기계면 문성리를 4시간동안 순회하시면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전국 시장·군수는 임지로 돌아가서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하고, “자조·자립·협동정신이 새마을정신이다, 농어촌 개발에 먼저 부락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라”... 여기서 새마을지도자가 처음 탄생하는 동기가 마련됩니다. “시장·군수는 새마을정신 주입에 점화역할을 하라, 그리고 문성동에 전기를 넣어 주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가운데 사진입니다.

기계면 문성리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기계면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도로가 넓혀지고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긍지와 용기를 갖고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찬 번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는 문성동 동민의 ‘우리의 다짐’에 발상지 표어입니다. 이 때 1971년 가을입니다. 여기서 ‘발상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측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이 가시고, 그 다음해 4월30일 전기가 들어온 데 대하여 기계면민, 문성동 주민들이 대통령 각하 기념 시찰비를 고맙다고 이렇게 표석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가꾸기사업 유공훈장입니다.

좌측 상단에 당시 이석걸 어른께서 받으신 포장증은 분실이 되고 포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영일군 기계면 면장 김두락 씨입니다. 포장증과 포장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기계면 문성동 홍선표 씨입니다. 국민 포장이고 포장증입니다. 그 밑에 하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한 기계면 문성동 마을상패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표창장입니다.

당시 영일군수 박준무 씨도 훈장을 탔습니다마는 지금 고인이 되시고, 수상 장면은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장증과 포장은 지금 수거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안 계셔서 부득이 지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년동안 묻혀 있었던 당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새마을운동의 자료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감추려 해도 박대통령의 위대한 새마을정신과 운동은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아무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도 부정하시면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신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일 것이며, 나아가 역사의 이단아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김관용 도지사님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발상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되려면 운동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포항시 기계면 현지에서는 운동한 흔적이 있는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운동한 흔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성은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기록, 훈장, 포장, 영상물 등은 확실히 기계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은 증거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증거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역사조작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 역사의 민족운동으로 3.1운동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하였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시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전인 1970년4월22일 유시에서 “모범적인 부락도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유시에서 보라고 한 지역과 대통령이 직접 시장, 군수, 도지사, 국무위원을 모시고 찾아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지시한 지역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기계면 문성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월9일 경운대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발표한 내용과 청도군에서 용역 의뢰하여 발표한 양쪽의 보고서를 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추진 실적은 전무합니다.

포항시 문성동에서는 운동한 보고서도 있고 그 뒷받침한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또한 새마을 37년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나간 역사의 고증을 사실을 사실대로 면밀히 파악도 하지 않고 청도를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결론 내린 이유와 그 후에 발상지에 관한 논란이 일자 다시 도지사께서는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도의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4월9일 경북도가 배부한 새마을운동 발상지 용역결과 보도 자료에 보면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37년사 편찬위원회와 함께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고 결정짓고 그 결정지은 근거로 “착상을 하였다, 주장을 하였다, 초점을 뒀다 한다, 타당성이 있다, 인정함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공식문헌의 부존재만으로 박대통령의 청도 방문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결과를 청도에 초점을 맞추어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논리로 역사의 실체를 편향적 시각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할 경운대학교와 새마을아카데미 37년사 편찬위원회에서 당시 증인과 자료문서 등 이번 6월 달 말에 납품되는 새마을 발상지 용역에 또 다시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 논란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자의 몫으로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새마을운동은 1970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에서 본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의 현장을 창시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전국에 보급하려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다가 시장, 군수, 도지사를 전부 모아놓으시고 교육하고 시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넓게 펼

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기계면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시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것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주민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시며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셨고 새마을사업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 상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이에 동민들은 그 뜻을 기리고자 박대통령의 기념비를 1972년4월30일 동네 어귀에다 세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문성동 홍선표 이장 지도하에 ‘67년부터 3~4년 동안에 어수선한 마을이 이렇게 부흥되었고 그 부흥이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쫓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정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농촌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쫓기하고 부흥하고 혁명이 일어난 사실은 바로 새마을운동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이러한 인정을 인정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통령께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동하고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한 현지에서 “부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주민들이 자조, 자주,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정신 고취에 진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취하고 진력하라”는 지시는 전국 지도자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고 온갖 힘을 다하라는 지시로 전국의 시장·군수에게 창시자인 박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의 이 말씀은 문성리를 보고 바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난 4월9일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청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집행부는 “사인하지 않았다” “경상북도가 하지 않았다” “경운대학에서 했다” “행정착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서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새마을

아카데미는 연구, 홍보, 교육 명목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대학에서 이번 발표로 인하여 지역을 분열시키고 도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신빙성의 결여로 인해 의견이 상처되어 도민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15억 3,000만 원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운동은 행사가 동반되어야 하며 실적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행사나 실적이 없으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없는 곳을 발상지라 지정할 수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창시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71년9월17일 기계면 문성리에서 전국 시장·군수는 임지로 돌아가서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가서는 문서로 전국 시·도, 시·군·구에 문성동과 같이 지도하고 실천하여 자조, 자립,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주입 점화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1971년9월17일, 18일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 비교 행정회의 시에 시찰현지에서 지시한 사항을 문서 ’71년9월23일 대비정 150-68 발신 대통령 비서실장, 전국 시장·군수 비교 지시사항을 시달하오니 각 시장·군수는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문서로 시달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청도군 신도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속에 묻혀 있다가 2006년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기계면 문성리라는 새로운 사실과 업적이 발견되었음에도 경상북도는 박대통령의 고향이요, 새마을 종주도로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따라 당시의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접근하고 조명해야 하는데도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우겨 법적인 비하로 이어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포항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확정되는 것을 염려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확정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기계 문성리의 완벽한 자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연구용역 결과와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았던 곳을 조명하여 편견된 시야로 주장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상실된 행위라 본의원은 어이가 없고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제 편향된 생각을 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님이나 대학교수님들 또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성인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어찌 새마을 발상과 새마을운동의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운동이 아닌데다 운동을 대입을 하려고 하니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운대학교 새마을 아카데미와 37년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답을 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무한 봉사정신과 새마을지도자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심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역을 분열시키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구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의 역사성을 지사님께서서는 바르게 정립하시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힘찬 전진과 함께 지사님께서서는 도민의 어려운 경제와 복리증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VI. 5분 자유발언

□ 2009년 6월 29일(월) 제23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권인찬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안동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권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경북도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 도시건설을 계획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청사는 수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도록 가장 튼튼하면서도 미학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마에 있는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은 약 2,080년전에 세워졌고, 초기 교회의 성전들은 1,000년을 훨씬 넘기고도 지금까지 우아한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건립하게 될 신청사는 세월이 한참 지난 먼 훗날까지 튼튼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수년전 영국 연방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했을 때, 안동을 일컬어 “한국 중의 한국” 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감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는 안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동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행정안전부가 신도청 건립과 관련하여 호화 설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건축 자재를 쓰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만 명품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 지방 청사와 비교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작으

며, 청사 건립사업비도 공무원 1인당 차지하는 비용으로 볼 때 전북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유학의 고향인 안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그리고, 튼튼한 건축물로 설계한다면 이것이 바로 명품 신청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둘째,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현재 안동시내의 도심이 텅 비게 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동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안동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특별시 한 복판에 위치한 ‘인사동’은 서울시의 제일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동도심부에도 여러 개의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서적류는 물론, 다양한 골동품 가게를 조성하고, 전통방식으로 만든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 전통 문화, 체험마을 등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도청 주변까지 대중교통이 연계되도록 한다면 신도청은 물론 안동 전체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를 계획할 때 도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일대에 대해 관광권역화를 제의합니다.

현재 안동의 관광패턴은 하회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안동을 지나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체류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안동의 관광권역을 하회마을과 안동시내, 그리고 도산구곡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재편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동댐 개발로 수면 하에 잠겨있던 “도산구곡 문화”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도산구곡 내의 200여개가 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원형상태로 결집하여 이것을 생태와 역사, 문학, 명상, 사상,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안동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7년이라는 긴 장정 끝에 결정된 도청이전은 우리 경북 도민의 오랜 숙원이

었습니다. 인고의 세월 끝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안동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유산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계형 경제 문제까지 고려하여 도시디자인을 설계 해서 추진한다면 세계 어느 유명 도시와도 겨룰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점 기획 기초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9일(월) 제23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만용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의성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도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삶의 질 향상을 다짐하고 제8대 경상북도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길 Korean Root”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전략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부처 장·차관, 16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었음은 김관용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선택적이고 전략적 정책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녹색교통수단으로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을 담보로 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 둘째,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보, 셋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넷째, 보험제 시행·신호등 개량 등 법규 및 제도의 정비·보완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OECD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인 네덜란드는 인구비례 자전거 보급률이 98.3%, 교통수송 분담률은 27%이며, 이웃 일본은 자전거보급률이 67.8%, 분담률이 14%로서 우리나라의 보급률 16.6%, 분담률 2.8%라는 현실은 자전거 이용률은 낮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프랑스, 영국, 미국에 비하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한 후진국일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열악한 자전거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설치할 경우 자전거 이용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61%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무료 대여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38%로 나타났습니다. 공영자전거, 소위 벨리브(velib) 보급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바이크 Network 사업과 2018년까지 280억원을 투자계획중인 자전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는 레저수단이기 이전에 도시 교통체계의 말단을 구성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낙동강과 동해안 등 700km가 넘는 자전거 길 조성 사업이 자칫, 관광·레저에 치중한 나머지 녹색성장의 주목적인 저탄소 경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을 간과하게 될까 본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생활밀착형과 관광레저형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방향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전거 부품 혁신 연구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및 첨단부품 소재 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1992년 자전거 연구원을 설립하고 70여명 연구인력으로 기술개발에 승부를 걸어 자전거 생산 1위 나라라는 영예와 함께 2008년 수출로 1조 5,000억을 벌어들인 대만을 심층 연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1970년대 대구·경북은 자전거 산업 부품업체의 70%가 동지를 튼 자전거 산업의 본고장 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전거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으나 중국의 저가공략 및 대만과 서유럽국가들의 고급화전략을 통한 수입제품들이 국내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없이 국내 자전거산업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견해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 하는 가칭 “자전거 타기 생활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 공감대 형성과 자전거인구의 저변확

대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독일의 보반지구는 포럼 보반이라는 민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보반지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및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의 개정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창원시, 남원시, 전주시 경우에도 출·퇴근 때가 되면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자전거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에 당부를 드립니다. 국가 중요정책은 교육현장에도 접목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그린스쿨(Green School) 사업, 경북교육청이 3년간 174억을 투입 농·어촌 소규모 초·중학교 17곳을 전원학교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실시 설계 단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을 네덜란드, 일본, 독일의 보반(Bauban)지구 등에 견학 보내어 녹색성장의 기본마인드와 실천전략을 직접보고·듣고·느끼게 해서 한국형 녹색성장의 모델로 깊숙이 녹아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5,000명의 보반(Bauban)지구엔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 건축가, 도시·교통 행정가가 방문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합시다. 의식의 녹색화를 통해 실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참여들이 모여 그린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바퀴의 자전거가 녹색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9일(월) 제23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이현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은 햅쌀이 나오기 전에 묵은쌀이 떨어지면서 공급부족으로 쌀값이 뛰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유례없는 대풍으로 쌀공급량 증가, 쌀소비 감소, 경기침체 등 세 가지 악제가 겹치면서 재고는 늘고 값은 떨어지고 있어 농촌은 지금 온통 쌀값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벼 재고현황은 117만 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 8,000톤에 비하여 34만톤이 늘어나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지역 벼 재고량은 13만 5,000톤으로 지난해 8만 5,000톤보다 무려 58.8%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한 쌀값 동향을 살펴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산지쌀 가격이 80kg을 기준으로 2008년9월말 현재 16만 756원에서 2009년6월 현재 15만 4,234원으로 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의 15만 8,596원에 대비해서도 1.4%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소매업자의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 26.4% 감소하였고,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할인마트도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쌀값 폭락 원인은 지난해부터 나타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민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소비감소가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태국 등 외국쌀의 의무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연 10만톤에서 40만톤까지 지원되던 대북식량 지원중단 등의 악제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면서 쌀관련 유통업자는 물론,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쌀값폭락이 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RPC의 경영악화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부 대형유통업자들은 쌀값폭락 조짐으로 계획된 매입을 취소하는 등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대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비축미의 매입을 확대해야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벼 8만 7,000톤을 수매하였으나, 금년도의 매입 계획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년 수준인 8만 7,000톤 이상을 수매하여 쌀값 파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가의 숨통을 터주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의하면 정부에서 벼 10만톤 이상의 벼를 수매 검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시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농협 쌀 재고량의 20% 이상을 정부가 조속히 시가 매입하여 일정기간동안 시장으로부터 격리조치하는 한편, 정부의 보유양곡 방출도 억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편 RPC의 산물벼 건조비를 현재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40kg 한 포대당 1,000원 정도 되는 산물벼 건조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포항, 경주 등 10개 시·군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벼 건조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RPC의 경영비도 경감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도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쌀 재고 해소를 위한 도민의 관심제고를 불러 일으켜야겠으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축진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기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6월 29일(월) 제23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최윤희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한나라당 비례대표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최윤희 의원입니다.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을 맞이하며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기회 평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고학력화에 따른 인적자원 향상, 여성가구주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과 기본 정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경북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지위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도정질문에서도 여성공무원 정책수준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은커녕, 도청이나 도교육청에 여성국장이 한명도 없는 곳은 전국에 경상북도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복지국장 한명만을 3급이상 고위직으로 고수하고 있었으나, 국장의 퇴직 후 그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9급에서 4급까지 무려 35.3년,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늦게 승진하는 사실로 경북의 여성공무원들이 고급관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차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인사관련 위원회, 즉 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도 전국 평균 13.3%인 데 비해 경북도는 11.3%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도의 전문여성인력 Pool의 저조함과 함께 여성인력개발 정책, 더 나아가 양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女幸’ 프로젝트를 내걸고 여성의 권익향상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으며, 부산·

경남·전남 등에서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경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본회의장 내에 지사님을 비롯한 의장님,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 모두 여성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며, 선거운동과정 최 일선에 나서서 끊임없이 굶은 일 마다 않고 앞장서 도와준 열혈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 제시한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과 희망들은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경북도의 여성에 대한 유리벽이 얼마나 두텁게 있는지 실로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7월 첫째 주는 올해로 14번째 맞는 여성주간입니다.

의례적인 각종 상 수여와 여성들만의 단발성 행사 개최가 아닌 지난 14년간 여성주관을 보내면서 경북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과 성과가 있었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양성평등 실현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지 노력하는 여성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의 실천은 일과 가정,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전환을 통한 책임이 전제되고, 지역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의지와 혁신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먼저 직접 나서서 여성들을 진정한 ‘역할파트너’로 인지하시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을 과감히 앞장서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7월 3일(금) 제234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이종원 의원(농수산위원회) ◎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누구나 잘 아는 불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울분을 토하며 일본을 규탄해 왔습니다.

다각도로 세계만방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독도가 표시된 고지도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 대한민국의 국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영토 박물관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야욕적이고 허구적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료정리와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자 1992년도에 설립된 독도박물관 내 향토사료관 입구에 설치된 울릉도 모형지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독도가 빠져있음을 본 의원이 2008년 9월5일 제22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현지확인 중 향토사료관 관람 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눈을 의심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나 사실인즉, 즉석에서 박물관장에게 조속한 시정을 주문하였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임시방편으로 독도표기를 해 놓음으로써 2008년12월 제230회 정례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2009년3월 제23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이 문제를 확인한 바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재차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 2008년도 예산 결산심사 예결위에서 다시 확인하였던 바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한 개선사항이 무참히 묵살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08년9월 이전부터 설립까지 약 1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독도가 빠져있는 모형지도가 향토사료관 입구에서 국내외 내방객을 맞이

하였으며, 2008년9월 조속한 개선을 주문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정확하지 않은 지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지 7개월이 지나는 이 순간에도 독도박물관 내 향토사료관 입구의 모형지도는 규격에 맞지 않은 독도가 어설픔게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차례나 본 의원이 간절하게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엉터리 모형도가 지금까지 버젓이 자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독도수호대책팀을 구성하여 독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2008년7월 31일부터 독도특위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형식적인 틀과 조직만으로는 어떤 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꼭 이룩하겠다는 열정이 함께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형지도를 제작·설치할 때 어느 누구 하나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한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설치했다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독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2008년도에는 15만명이 이곳을 관람하였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10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뜻있는 국내외 관광객이 이 사실을 직시하였다면 과연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했는지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네 번째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후세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7월 3일(금) 제234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손진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손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5분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결식아동에 대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차별받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UN은 이미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결의하면서 완전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의제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물결 속에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6월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총 8,670개 건물에 31만 4,022개 시설로 이 가운데 69.5%인 21만 8,487개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은 51.3%인 16만 1,200개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평균 설치율 77.5%와 적정 설치율 5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북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국대비 5.7%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의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미흡한 수준인지 통계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이 2009년4월 현재 광주 3.4%, 제주 3.2%, 전북 3.2%, 전남 3.1%, 대구 3%, 경북 3%순으로 나타나 우리 도는 법정비율 3%에 겨

우 구색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공동으로 평가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비교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57.14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70점 1위, 충남이 69.10점으로 2위, 경남이 63.87점으로 3위 수준이며, 경북도는 57.17점으로 9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얼마나 소홀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북도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검토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7월 3일(금) 제234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이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박병훈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년 동안 방폐장 부지선정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 하다가 결국 2005년11월2일 경상북도민과 경주시민의 결단으로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방폐장의 입지가 국운을 결정지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기에 당시 정부는 유치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싶을 뿐입니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이 다른 지역 모두가 목숨 걸고 반대하던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시설공사가 4월말 현재 종합공정률 47.5%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거듭된 양성자가속기사업 국비지원 요청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방폐장 유치와 아무 상관없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1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현재 월성원전에서 건설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준공이 2010년6월에서 2012년12월로 2년6개월 연기된다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1조 5,0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절대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방폐장 사업에 있어 지질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지적합성 조사를 하고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약지반이 문제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관리공단 측의 무책임한 행태는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

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지만 지난 4월1일 ‘방폐장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아래에 있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닌 지식경제부 장관이 맡게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였기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격이 크게 하락한 특별법 개정은 우리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철면피 행정, 그리고 특별법 개정사실조차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방폐장, 한수원, 양성자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잇는 원전, 태양광, 풍력 등 동해안에너지 산업을 연계해 첨단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미래 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도 관련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 것에 역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폐장 유치를 목표로 지역사업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특별법의 위격을 격하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 특별법 개정을 전면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그리고 엄중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폐장의 연약지반 문제로 인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성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폐장관리공단은 이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대안으로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폐장사업 전면 백지화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폐장 유치 이후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업의 연속성과 정부신뢰성 차원에서 당초 입법취지대로 특별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도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당초 약속한 지역지원사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이상효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

☐ 결산안 : 2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일반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소 계	1,368	-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70	50	7	4	9
	5급이하	1,287	-			

별표3 중 별정직 소계란 “43”을 “42”로, 별정직 5급상당이하란 “38”을 “37”로, 기능직 계란 “355”를 “35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							⋮						
일반직	소 계	1,365	-				일반직	소 계	1,368	-			
	2~3급	1		1				2~3급	1		1		
	3 급	9	8		1			3 급	9	8		1	
	3~4급	1	1					3~4급	1	1			
	4급	69	49	7	4	9		4급	70	50	7	4	9
	5급이하	1,285	-					5급이하	1,287	-			
별정직	소 계	43	-				별정직	소 계	42	-			
	⋮							⋮					
	5급상당이하	38	-					5급상당이하	37	-			
	⋮							⋮					
기능직 계		355	-				기능직 계		353	-			
⋮							⋮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직으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경제과학진흥국장
3. 건설도시방재국장
4.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5.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차장
6. 경상북도 부교육감
7.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장

- 9.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장
- 10. 의회 교통관련 위원회 위원 중 1인
- 11.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교통정책과장
2. 도로철도과장
3. 경상북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4.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5.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업무 부서장
6.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안전관리업무 부서장
7.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업무 부서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교통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대표
2.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결혼한 지 3년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2〕”을 “별표 2”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의 기준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상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물품</u> 의 취득, 보관, 사용, 처 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상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물품</u> 의 취득, 보관, 사용, 처 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경상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물품</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2조(정의) ----- ----- <u>각 호</u> -----.		
1. 본청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u>제20조</u> 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 을 말한다.	1. --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제18조</u> 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 을 말한다.	1. --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제18조</u> ----- -----.		
2.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교육청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제36조</u> 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 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제34조</u> 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 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 :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 <u>제34조</u> ----- -----.		
4. (생략)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u>[별표 1]</u> 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u>[별표 1]</u> 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종류) ----- ----- <u>별표 1</u> -----.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 은 <u>[별표 2]</u> 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 은 <u>[별표 2]</u> 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 <u>별표 2</u>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u>각호</u>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u>각호</u>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u>각 호</u>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u>각호</u> 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u>각호</u> 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u>각 호</u> ----- -----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지(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별표 1]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생략)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 ③ (생략) (2) 소모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 ----- ---- 각 호 ----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 ----- ---- 각 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 ④ ----- ----- ----- 각 호 ----- ----- 1천만원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 ----- ----- [별표 1]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만원 -----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5만원 -----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5인 이내”를 “60인 이내”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하여 한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심의 제척)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전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전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전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전

제11조제1항 중 “90인 이내”를 “7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정원은 <u>75인 이내로</u> 하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u>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u> 2. <u>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u> 3. <u>위원의 품위손상 등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	제6조(구성)① -----<u>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u> -----. ② 위원회의 정원은 <u>60인 이내로</u> 하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u>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심의 제척) ① 도지사는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u> <u>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u> 2. <u>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u> 3. <u>위원의 품위손상 등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 ② 도지사는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u> 1. <u>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u> 2. <u>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u> 3. <u>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u> 4. <u>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 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u>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90인</u>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④ (생략)	제11조(전문위원)① ----- <u>70인</u> 이내의 -- ----- ----- ----- ② ----- <u>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u> -----. ③~④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1조 내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5조 내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부터 법 제11조의4까지의 규정 및 영 제15조부터 영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 중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날까지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이상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 이상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 잔여부담금

제8조제1항 중 “영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u>	<u>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 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u>	1. <u>"부담금"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 담금을 말한다.</u>
가. <u>2개 이상의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걸쳐는 도로(이하 "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영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u>	2. <u>"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u>
나. <u>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u>	
다. <u>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 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하 "환 승주차장"이라 한다)</u>	
라.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 영차고지</u>	

현행	개정안
2. "부담금" 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 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도지사는 법 제11조 내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5조 내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1조부터 법 제11조의4까지의 규정 및 영 제15조부터 영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①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제5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①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

현행	개정안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이상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이상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부담금 ②~⑤(생략)	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 중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날까지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이상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이상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 잔여부담금 ②~⑤(현행과 같음)
제8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사업(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제8조 (권한의 위임) ①----- ----- -----영 제17조의4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공제서류의 제출) ①영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제서류의 제출) ①영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세입) (생략)	제13조 (세입)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 (세출) (생략)	제14조 (세출)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 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 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 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 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 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 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결산안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9. 6. 29(월)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1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9. 6.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6. 25 : 상정·질의·토론·의결)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6. 26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재홍)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의 결산 승인

4.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괄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 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1억 72백만원¹⁾을 포함하여 4조 8,738억 96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4조 9,646억 26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4조 5,925억 33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720억 93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57억 35백만원임.

◆ 세입 ·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입 (B)	세출 (C)	잉 여 금 (B-C)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8,739	49,646	45,925	3,721	1,403	60	2,257
일 반 회 계	41,169	42,019	38,890	3,130	1,371	60	1,698
특 별 회 계	7,570	7,627	7,036	591	32	0	559

1) 종합심사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2억 83백만원을 포함하여 4조 1,169억 43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4조 2,019억 44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3조 8,889억 72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129억 73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7억 92백만원임.

(2) 특별회계

-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억 89백만원을 포함하여 7,569억 52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7,626억 82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035억 61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591억 21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9억 42백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예 산 현 액		4,873,896	100.0	4,116,943	100.0	756,952	100.0
세 입 결 산 액 (A)		4,964,626	101.9	4,201,944	102.1	762,682	100.7
세 출 결 산 액 (B)		4,592,533	94.2	3,888,972	94.5	703,561	92.9
잉 여 금 (A-B)		372,093	7.6	312,973	7.6	59,121	7.8
	명시·사고이월	140,319	2.8	137,141	3.3	3,178	0.4
	보조금집행잔액	6,040	0.1	6,040	0.1	0	0
	순 세계 잉여금	225,735	4.6	169,792	4.1	55,942	7.4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8,739	49,646	45,925	3,721	1,403	60	2,257
일 반 회 계		41,169	42,019	38,890	3,130	1,371	60	1,698
특 별 회 계		7,570	7,627	7,036	591	32	0	559
공 기 업	소 계	2,567	2,571	2,298	273	0	0	273
	지역개발기금	2,567	2,571	2,298	273	0	0	273
기 타	소 계	5,003	5,056	4,738	318	32	0	286
	의료급여기금	4,040	4,051	4,033	18	0	0	18
	치 수 사 업	304	335	271	64	26	0	38
	경북도립대학운영	82	83	76	8	0	0	8
	광역교통시설	42	42	42	0	0	0	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36	546	317	229	6	0	223

2) 세입결산

가. 총괄

-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4조 9,646억 26백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4조 8,738억 96백만원 보다 907억 30백만원이 증가(1.9%)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4조 2,019억 44백만원(84.6%)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7,626억 82백만원(15.4%)임.
- 2008년도 미수납액은 730억 26백만원으로서, 124억 30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05억 9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합계	4,873,896	5,037,652	4,964,626	73,026	12,430	60,596	98.5
일반회계	4,116,943	4,273,886	4,201,944	71,941	12,427	59,514	98.3
특별회계	756,952	763,767	762,682	1,085	3	1,082	99.9
공기업	256,655	257,101	257,101	0	0	0	100.0
기타	500,297	506,665	505,581	1,085	3	1,082	99.8

$$\begin{array}{lcl}
 \text{※ 예산현액} & =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4,873,896\text{백만원} & & 4,793,724\text{백만원} \quad 80,172\text{백만원}
 \end{array}$$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2,019억 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1,169억 43백만원 보다 850억원 (2.1%)이 증가하였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7,883억 27백만원, 세외수입 4,065억 75백만원, 지방교부세 9,116억 81백만원, 국고보조금 2조 953억 62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719억 41백만원으로, 124억 27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95억 1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C/A	C/B
합 계	4,116,943	4,273,886	4,201,944	71,941	12,427	59,514	102.1	98.3
지 방 세	726,000	859,046	788,327	70,720	12,396	58,324	108.6	91.8
세 외 수 입	393,066	407,796	406,575	1,221	31	1,191	103.4	99.7
지방교부세	901,372	911,681	911,681	0	0	0	101.1	100.0
국고보조금	2,096,505	2,095,362	2,095,361	0	0	0	99.9	100.0

$$\begin{array}{lcl}
 ※ \text{예 산 현 액} & = & \text{예 산 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4,116,943\text{백만원} & & 4,039,660\text{백만원} \quad 77,283\text{백만원}
 \end{array}$$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626억 8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569억 52백만원보다 57억 30백만원이 증가(0.8%) 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2,571억 1백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4,050억 51백만원, 치수사업 334억 52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3억 28백만원, 광역교통시설 41억 71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545억 79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10억 85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억 82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자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 월	C/A	C/B
합 계	756,952	763,767	762,682	1,085	3	1,082	100.7	99.9
지역개발기금	256,655	257,101	257,101	0	0	0	100.2	100.0
의료급여기금	403,964	405,051	405,051	0	0	0	100.3	100.0
치 수 사 업	30,371	34,168	33,452	717	3	714	110.1	97.9
경북도립대학운영	8,240	8,328	8,328	0	0	0	101.1	100.0
광역교통시설	4,170	4,539	4,171	368	0	368	100.0	91.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3,552	54,579	54,579	0	0	0	101.9	100.0

$$\begin{array}{lcl}
 \text{※ 예산현액} & =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756,952\text{백만원} & & 754,064\text{백만원} \quad 2,889\text{백만원}
 \end{array}$$

3) 세출결산

가. 총괄

- 2008년도 세출결산액은 4조 5,925억 3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조 8,738억 96백만원 대비 94.2%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조 8,889억 7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035억 61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2,813억 63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1,403억 19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10억 43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B/A)
합계	4,793,724	4,873,896	4,592,533	140,319	141,043	94.2
일반회계	4,039,660	4,116,943	3,888,972	137,141	90,831	94.5
특별회계	754,064	756,952	703,561	3,178	50,213	92.9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조 8,889억 7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1,169억 43백만원 대비 94.5%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6,031억 9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78억 16백만원, 교육 54억 96백만원, 문화 및 관광 2,211억 96백만원, 환경보호 3,053억 98백만원, 사회복지 8,785억 95백만원, 보건 569억 4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7,498억 9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123억원, 수송 및 교통 2,937억 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29억 52백만원, 과학기술 251억 97백만원, 기타 2,562억 89백만원임.

- 집행잔액 2,279억 71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1,371억 41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08억 3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4,039,660	4,116,943	3,888,972	137,141	90,831	94.5
일 반 공 공 행 정	634,204	637,768	603,193	6,021	28,554	94.6
공공질서및안전	200,301	220,295	197,816	21,424	1,056	89.8
교 육	5,068	6,116	5,496	0	620	89.9
문 화 및 관 광	221,728	222,734	221,196	442	1,096	99.3
환 경 보 호	305,006	308,745	305,398	352	2,995	98.9
사 회 복 지	878,530	879,406	878,535	0	811	99.9
보 건	57,541	57,541	56,944	457	141	99.0
농 립 해 양 수 산	787,001	799,810	749,895	37,457	12,459	93.8
산 업 중 소 기 업	111,349	113,536	112,300	0	1,236	98.9
수 송 및 교 통	321,283	364,057	293,702	69,091	1,264	80.7
국토및지역개발	184,002	185,029	182,952	1,746	330	98.9
과 학 기 술	25,044	25,294	25,197	0	98	99.6
예 비 비	49,618	37,407	0	0	37,407	0.0
기 타	258,984	259,203	256,289	151	2,764	98.9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035억 6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7,569억 52백만원 대비 92.9%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297억 7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4,032억 80백만원, 치수사업 270억 86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75억 66백만원, 광역교통시설 41억 68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16억 86백만원임.
- 집행잔액 533억 91백만원 중 31억 78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02억 13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754,064	756,952	703,561	3,178	50,213	93.3
지 역 개 발 기 금	256,655	256,655	229,776	0	26,879	89.5
의 료 급 여 기 금	403,964	403,964	403,280	0	684	99.8
치 수 사 업	28,483	30,371	27,086	2,584	701	89.2
경북도립대학운영	8,240	8,240	7,566	0	674	91.8
광 역 교 통 시 설	4,170	4,170	4,168	0	2	99.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552	53,552	31,686	594	21,272	59.2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사용

-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²⁾은 독도영유권 공고화 홍보사업 1억 22백만원, 혁신 비즈니스 센터 운영 5천만원 등 총 8건에 2억 97백만원이며,
- 예산이체³⁾는 道 본청의 대규모 조직개편과 부서간 업무기능 조정으로 인하여 총 606건에 2,163억 34백만원임.

라. 계속비 집행

- 2008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⁴⁾

-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496억 18백만원 중 경상북도 의회장 장례비 지원 外 41건 122억 1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2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 6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백만원임.

2) 『예산전용 상세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3)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78~1053쪽 참조

4)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⁵⁾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낙동강 Eco trail 및 Ecothon 코스개발』 등 142건에 1,403억 19백만원으로
- 그 중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946억 4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75건 946억 4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9건에 424억 93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31억 7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5건 17억 73백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14억 5백만원임.

사.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아. 수입대체경비

- 지방재정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중 세입결산액은 8억 5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 36백만원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5. 세입 · 세출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08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 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 2,368억 81백만원 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2,639억 81백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7년 말 현 재 액(A)	2008년도 증감			2008년말 현재액(E=A+D)
		수납액(B)	지출액(C)	증감(D=B-C)	
계 (17종)	236,881	134,065	106,965	27,100	263,981
중소기업근로자재녀장학기금	3,385	119	116	3	3,38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7,071	81,291	82,706	△1,415	105,656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4,494	527	425	103	4,597
체 육 진 흥 기 금	15,570	653	499	153	15,723
농 어 촌 진 흥 기 금	37,913	39,926	13,600	26,327	64,240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1	59	52	8	1,518
포 플 라 장 학 기 금	218	55	9	46	265
사 회 복 지 기 금	6,594	358	85	274	6,868
재 해 구 호 기 금	16,183	681	161	520	16,703
장 애 인 복 지 기 금	2,118	90	71	19	2,137
노 인 복 지 기 금	2,480	123	84	38	2,518
여 성 발 전 기 금	3,530	171	110	61	3,591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337	176	115	61	3,398
식 품 진 흥 기 금	13,985	2,537	4,140	△1,602	12,382
재 난 관 리 기 금	17,259	6,039	3,315	2,725	19,98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234	1,259	1,478	△220	1,014
통 합 관 리 기 금	77,617	5,171	3,626	1,545	79,162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8년도말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1조 3,473억 20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1조 3,615억 86백만원보다 142억 6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34억 68백만원, 특별회계 9,319억 83백만원, 기금 3,018억 69백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 11백만원, 융자금 채권이 1조 3,472억 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1,347,320	113,468	931,983	301,869	
보증금채권	111	105	6	0	◦ 일반회계 · 전화 전용회선 예치금 등 105 ◦ 특별회계 · 경북도립대학 6
융자금채권	1,347,209	113,363	931,977	301,869	◦ 일반회계 · 농촌주택개량 97,860 · 새마을소득지원사업외1건 15,503 ◦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931,977 ◦ 기 금 · 농어촌진흥기금 54,488 · 사회복지기금 116 · 중소기업육성기금 231,581 · 식품진흥기금 9,904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5,780

나. 채 무

- 2008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9,981억 53백만원으로, 2007년말 1조 80억 12백만원 보다 98억 5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89억원, 특별회계 6,540억 86백만원, 기금 1,251억 68백만원임.
- 종류별로는 지방채 7,792억 53백만원, 차입금 2,189억원임.

◆ 채무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회 계 별				채 무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9,982	2,189	6,541	1,252	
지 방 채		7,793	0	6,541	1,252	
	공 기 업 특별회계	6,541	0	6,541	0	•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출 6,541
	기 금	1,252	0	0	1,252	• 중소기업진흥공단 2 • 지역개발기금 차입 1,250
차 입 금		2,189	2,189	0	0	• 지역개발기금 차입 2,185 • 청사정비기금 차입 4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8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8,025억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7,607억 5백만원 보다 417억 95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가 1,728필지 409억 1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363필지 145억 18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263억 98백만원이 순증 하였음.
 - 건물은 59동 162억 2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34동 8억 32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153억 96백만원이 순증 하였음.
 - 그 외 공작물,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 기타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2007년도		증 감		2008년도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7,607		418		8,025
토 지(필)	74,481	5,788	1,365	264	75,846	6,052
건 물(동)	624	1,440	25	154	649	1,594
입목죽(주)	3,745,000	95	0	0	3,745,000	95
공작물(점)	3	32	0	0	3	32
선 박(척)	2	21	0	0	2	21
항공기(대)	2	131	0	0	2	131
유가증권(주)	1,947,953	97	0	0	1,947,953	97
용익물권(건)	49	2	0	0	49	2

나. 물 품

- 2008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638억 21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547억 79백만원 보다 90억 4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94대 86억원, 구급차 31대 19억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 전환하여 140억원이 증가하고,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61대 27억원, 실체현미경 23대 3억원 등을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50억원이 감소하였음.

◆ 증감사유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도		증 감		2008년 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349	547	△56	90	2,293	638
구 매	1,720	474	86	56	1,806	530
관리전환	629	73	△142	34	487	108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08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4조 7,075억 25백만원, 세출 4조 3,627억 58백만원으로 3,447억 6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4,707,525	4,362,758	344,767
일 반 회 계		4,201,944	3,888,972	312,972
특 별 회 계		505,581	473,786	31,795
	의료급여기금운영	405,051	403,280	1,771
	치 수 사 업	33,452	27,086	6,366
	경북도립대학운영	8,328	7,566	762
	광 역 교 통 시 설	4,171	4,168	3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4,579	31,686	22,893

나. 세입세출외 현금

- 2008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8억 5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31백만원 보다 74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50백만원, 보관금 7억 45백만원, 잡종금 등 기타 20억 62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2007년도말 현 재 액	2008년 도 증 감			2008년도말 잔 액
		증 가 액	지 출 액	차 감 액	
합 계	2,931	1,892	1,966	△74	2,857
보 증 금	45	35	30	5	50
보 관 금	847	1,557	1,659	△102	745
잡종금 등 기 타	2,039	300	277	23	2,062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조 8,738억 9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4조 3,031억 96백만원 보다 5,707억원(13.3%)이 증가하였으며,
- 2002년부터 최근 7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6.0%임.

◆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장 륜(%)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35,501	38,598	32,273	35,718	39,550	43,032	48,739	6.0	13.3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4조 9,646억 27백만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4조 5,925억 33백만원으로,
 - 결산잉여금은 3,720억 9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964억 21백만원, 사고이월 438억 98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1,403억 19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0억 4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257억 35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10.1%, 세출부문은 11.2%씩 증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세입부문이 11.0%, 세출부문이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전전년 대비 8.9%와 8.8%에 비해 증가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13.2%, 세출부문 14.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0.3% 증가하는 반면, 세출부문은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부문이 전년도 대비 11.6%로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각각 25.9%, 24.5%씩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 7.23~7.26 기간 중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지원금 등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道의 경우 이러한 의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시 해당부처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세외수입의 극대화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되어야 함.

◆ 수입 · 세출 5년간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장율(%)	
							연평균	전년대비
세입	합 계	3,430,380	3,702,370	4,107,912	4,472,017	4,964,626	10.1	11.0
	일반회계	2,692,516	2,992,674	3,356,733	3,711,722	4,201,944	12.3	13.2
	특별회계	737,864	709,696	751,179	760,295	762,682	0.7	0.3
	(A) 공기업	475,633	408,985	368,212	273,637	257,101	△11.3	△6.0
	(A) 기 타	262,231	300,711	382,967	486,658	505,581	13.5	3.9
세출	합 계	3,054,138	3,360,492	3,775,453	4,105,826	4,592,533	11.2	11.9
	일반회계	2,512,646	2,805,319	3,092,367	3,383,907	3,888,972	12.7	14.9
	특별회계	541,492	555,173	683,086	721,919	703,561	4.0	△2.5
	(B) 공기업	286,033	258,608	318,571	260,056	229,776	△6.6	△11.6
	(B) 기 타	255,459	296,565	364,515	461,863	473,785	12.3	2.6
잉여금 (A-B)		376,242 (11.0%)	341,878 (9.2%)	332,459 (8.1%)	366,191 (8.2%)	372,093 (7.5%)	-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2007년 대비 증감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예산현액	%	결산액	%
계	35,375	41,169	37,117	42,019	5,794	16.4	4,902	13.2
지방세	7,200	7,260	8,340	7,883	60	0.8	△457	△5.5
세외수입	3,931	3,931	4,155	4,066	0	0.0	△89	△2.1
지방교부세	6,884	9,014	7,244	9,117	2,130	30.9	1,873	25.9
보조금	16,810	20,965	16,828	20,954	4,155	24.7	4,126	24.5
지방채및예치금	550	0	550	0	△550	△100.0	△550	△100.0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조 2019억 4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 그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조 70억 4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1.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5,998억 2백만원(24.9%)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1,949억 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45억 80백만원(4.4%)이 증가하였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총 결손처분액은 124억 3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4억 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백만원임.
-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123억 96백만원, 세외수입은 31백만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92억 76백만원에 비해 31억 20백만원이 증가한 123억 96백만원을 정리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체납율은 2003년~2006년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2007년부터 전년대비 0.3%, 2008년에는 전년대비 1.2%씩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설정임.

- 지방세 결손처분액 123억 96백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81억원, 행방불명이 3억원, 시효완성 7억원, 공매시무배당 19억원, 기타가 14억원 등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결손처분	다음년도1월	
2003년	612,682	557,352	55,330	7,363	47,967	9.0
2004년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8.5
2005년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7.2
2006년	869,517	811,081	58,436	6,828	51,608	6.7
2007년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7.0
2008년	859,046	788,327	70,720	12,396	58,324	8.2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 타
지방세	12,396 (100.0%)	8,110 (65.4%)	309 (2.5%)	703 (5.7%)	1,892 (15.3%)	1,382 (11.1%)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상북도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6종으로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626억 82백만원임.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 2,571억 1백만원, 의료급여기금 4,050억 51백만원, 치수사업 334억 52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3억 28백만원, 광역교통시설 41억 71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545억 79백만원임.
- 2004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2005년도만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이 5년간 4,756억원에서 2,571억원으로 매년 감소되어 2,185억원이 감축된 것으로 이는 채권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 5년간 1,992억원이나 증대된 것으로 이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세입이 42억원으로 전년대비 52억원(△55.5%) 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임.

◆ 연도별 · 자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자원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737,864	709,697	751,179	760,295	762,681
지역개발기금	475,633	408,984	368,212	273,637	257,101
의료급여기금	205,898	245,532	286,838	384,736	405,050
치수사업	40,884	36,608	49,521	39,771	33,452
경북도립대학운영	8,157	6,608	6,255	7,118	8,328
광역교통시설	7,292	11,965	10,181	9,380	4,17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	-	30,172	45,653	54,579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08년도에 총 7,637억 6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626억 82백만원을 징수하고 10억 85백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이월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14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 68백만원으로 총 10억 82백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음.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조 8,889억 7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1,169억 43백만원의 94.5%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결산내역⁶⁾중 특이사항을 보면
 - 사회복지 부문이 8,785억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7,498억 95백만원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경비인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6,031억 93백만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이 54억 96백만원으로 0.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부문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부 문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비율
	총 계	4,116,943	3,888,972	
1	사 회 복 지	879,406	878,595	22.6
2	농 립 해 양 수 산	799,810	749,895	19.3
3	일 반 공 공 행 정	637,768	603,193	15.6
4	환 경 보 호	308,745	305,398	7.9
5	수 송 및 교 통	364,057	293,702	7.6

※ 총 14개 부문별 결산내역중 상위 5개 부문만 작성

6)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 『부문별 세출 결산 내역』 도표 참조

(2) 예비비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496억 97백만원 중 경상북도 의회장 장례비 지원 外 41건에 122억 1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2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 62백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42건 중 21건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비이며, 10건은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및 경상북도 의회장 장례비 지원금이며, 5건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에 따른 우리 道 부담금이며, 나머지는 민사 소송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임.
-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승소 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지급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출하였음.
- 이와 같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지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75건 946억 48백만원, 사고이월 59건 424억 93백만원으로 총 134건에 1,371억 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9억 5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는 연평균 9.1%, 전년대비 82.4%로 사업건수와 함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업기간이 장기간(1년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업담당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평균	전년 대비
68	125,586	84	96,724	73	79,072	88	75,183	134	137,141	△15.4%	82.4%

(4) 집행잔액(불용액) 현황⁷⁾

- 200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1,169억 43백만원의 2.2%에 해당하는 908억 3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9%인 144억 55백만원이나 증가한 규모로서,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억 13백만원, 예산절감이 18억 92백만원,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92억 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억 94백만원, 예비비가 382억 2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매년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 집행잔액(불응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7년	90,831	31,013	1,892	9,207	10,494	38,225
2006년	76,376	1,780	742	7,209	5,533	61,092

(5)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⁸⁾

-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도비 포함) 1조 5,705억 93백만원 중 1조 5,209억 10백만원(96.8%)을 집행하고, 427억 53백만원(2.7%)을 이월하였으며, 69억 31백만원(0.4%)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이 96.8%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수산진흥과 소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근해)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시켰으며,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액 44백만원 중 24백만원(54.2%)만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45.8%인 20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소방장비보강 사업은 예산액 37억 60백만원 중 13억 66백만원을 집행하고 23억 94백만원(63.7%)을 이월시켰음.

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035억 6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569억 52백만원의 92.9%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17억 73백만원, 사고이월 3건 14억 5백만원 등 31억 78백만원임.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사무관리비 과다계상

-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집행잔액(불용액) 6억 74백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1억 21백만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어 경상경비의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관례적으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여 경비를 집행하다가 지출사유가 줄어들거나 미발생하면 반드시 정리추경 등을 통해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FTA 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 및 행정이 감당해야 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사업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 편성 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농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8년도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19.0%)하였고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설립 4억 55백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4억 34백만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 1억 77백만원의 경우 예산편성 이후 전액 불용시킨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이 아닌지, 불용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용중인 『수입대체경비 운영개선』 등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률,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보 조 자 료

1. 이월사업 내역 /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4.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
5.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
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1. 이월사업 내역

가. 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94,647,846		
낙동강 Eco Trail 및 Ecothon코스개발	124,600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새경북기획단
낙동강생태자원 조사	69,100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호국 평화벨트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	"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579,092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기간 소요로 이월	정 책 기 획 관
명품한우육성교육 및 지도	46,500	사업추진예정지의 컨설팅을 포함하여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축 산 경 영 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근해)	28,372,000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됨에 따라 연내 최종사업자 선정공란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수 산 진 흥 과
지방어항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200,000	어항기본계획변경 용역(삼정항) 결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
지방어항건설	592,758	공사원가 사전심사, 일상감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요기간 장기화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생산기반시설 확충	80,000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관계로 동절기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이월	수 산 자 원 개 발 연구소
낙동강토속어류 산업화센터건립	732,000	'09년1월 기본계획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	민 물 고 기 연구센터
재단법인경상북도 환경연수원설립	100,000	발기인구성 및 이사선임, 창립총회 등 추진 일정이 늦어져 부득이 명시이월	환경 정책 과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49,100	과업지시서 및 원가지시서 및 원가계산 용역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동절기 조사 불가로 이월	산 림 녹 지 과
임업시험연구 기반시설확충	476,800	11월말 공사착공으로 연도내 사업완료불가에 따라 명시이월	산 림 환 경 연구원
수목원확대조성	10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고시가 필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수요 신청중으로 09월2월 고시결정 후 사업추진코자 부득이 명시이월	수 목 원 관 리 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사방사업	798,000	금회추경에 중앙지원사업 증액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산림환경 북부지원
산림재해복구사업	3,290,116	수목식재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독도바다사자(강치) 복원사업	80,000	자료수집, 원가계산 등 제반절차 이행을 거쳐 용역기 간이 '08. 11~'09. 10로 확정, 연도내 사업이 불가능	독도수호 대책팀
독도영유권공고화 홍보사업	100,000	프로그램 제작소요기간이 '08. 9~'09. 8로 확정,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능	"
합리적인온천 개발관리	125,500	온천발전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이 대구경북연구원과 10월 계약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도시계획과
동해안권발전종합대 책	400,000	중앙부처 협의 소요기간감안 절대공기부족예상	균형개발과
동해안특정지역 개발사업	180,000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시 보완요구사항에 따라 집행 및 사용시기 미도래	"
지방공항활성화사업	200,000	국토해양부 7억예산 용역결과 추이 지켜본 후 판단	"
신발전지역개발사업	300,000	업무처리지침 등 법령통보지연으로 계획변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9,850,397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사업의 공사기간 장기소요 및 토 지보상, 각종민원 해결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 능하여 명시이월	도로철도과
지방도건설	632,166	설계비 지급시기 미도래 및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지방도건설	8,394,000	공사기간 장기소요 및 토지보상, 각종 민원 해결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道 시행)	2,469,945	공사 및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치수방재과
건축물대장정비	151,000	국토해양부 사업기간확정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건축지적과
사리도확·포장사업	169,610	절대공기부족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유지관리	1,062,816	보상협의 어려움 및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	"
위험도로구조개선	1,213,060	보상협의지연,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 협의 후 발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	"
교 개체사업	477,359	편입토지소유의 감정가격불만으로 보상협의지연	"
사리도 확·포장	1,244,000	관련기관(철도공사)과의 토지수용절차협의를 따른 명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수해복구	2,603,872	절대공기부족	종합건설 북부지소
위험도로개량	2,389,116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위험도로구조개선	951,650	행정협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맑고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1,158,216	전문적인 정밀안전진단 용역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회계계약심사과
소방장비보강	6,366,225	생화학구조차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계약희망 업체가 없어 수의시담등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추진중으로 부 득이 명시이월, 중환자용 구급차는 최종차량규격서 미 확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908,945	지역주민 민원 제기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지변경 의견표명	구미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4,965,246	행정절차 진행완료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며 ,08년 11 월경 공사착공하여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영천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250,000	분양가 확정이 되지 않음	상주소방서
소방장치보강	264,373	청사마무리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고, 정원승인과 개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성주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250,000	청사마무리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고, 정원승인과 개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
기본경비	150,593	청사마무리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고, 정원승인과 개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777,621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울진소방서
관광자원전수조사	62,500	관광자원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이 09.4.30까지 계약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권역계획	186,000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먹는물안전성검사	200,000	재입찰 과정을 거치며 조달청 계약이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및골프장 안전성검사	59,271	11월 계약완료하였으나 물품납품 및 안정적인운동을 위 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연도내 사업완 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먹는물안전성검사	197,595	11월 계약완료하였으나 물품납품기간이 4개월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보건환경 북부지원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42,492,752		
정보통신민원정보 시스템구축분담금	56,93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주관변경 및 선정지연	정보통신 산업과
전원마을조성	168,000	세입부족에 따른 자금이월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농촌개발과
인공어초시설	20,026	동계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수산진흥과
영남옛길복원사업	103,750	용역기간 미도래	환경정책과
습지자원 관리	68,000	용역기간 미도래	"
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	22,750	용역기간 미도래	산림녹지과
임도사업	69,719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부족	산림환경 서부지원
사방사업	1,465,440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부족	"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	209,980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행과 연계한 과업 일시중지	산림생태 과학원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	123,162	일부공사 공기부족 및 관급자재 미집행 등	"
자연휴양림조성	522,787	일부공사 공기부족 및 관급자재 미집행 등	"
자연휴양림조성	17,712	본 공사 미준공으로 인한 감리아월	"
건설도시환경조성 추진경비	7,440	08. 12. 29 계약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 월	도시계획과
혁신도시기반시설 조성지원(보조)	3,525,360	집행잔액	균형개발과
혁신비즈니스센터운영	128,716	용역일시정지에 따른 완공기간 연장	"
혁신도시기반시설 조성지원	273,000	집행잔액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23,592.18	절대공기 부족	도로철도과
지방도건설	7,462,901	절대공기부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지방도체불용지보상	243,220	보상비	도로철도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	4,870,712	절대공기부족 및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	치수방재과
지리정보포털시스템구축	368,563	위성영상신규촬영지연 및 취득기간 확장 및 위성영상정보시스템확대 구축사업 연장에 의해 이월	건축지적과
새주소생활화촉진	13,860	2009. 6월에 사업완료	"
사rido확포장사업	397,720	감정가격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종합건설 사업소
교통소통대책	1,832,630	절대공기 부족 및 감정가격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
지방도유지관리	782,400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
위험도로구조개선	368,310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
교량개체사업	1,812,807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사rido확포장	272,399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및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교통소통관리	76,097	절대공기부족 및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수해복구	737,351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
위험도로개량	595,543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
위험도로구조개선	610,065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48,600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22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교량 및 터널개보수	2,150,564	절대공기 부족 및 지급시기 미도래	"
소방장비보강 (자체재원)	68,000	물품 제조국 현지사정으로 납품지연에 따른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등	186,979	부지 소유권 불일치로 증축불가하여 도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하여 공기부족	울진소방서
소방조직배양	45,796	부지 소유권 불일치로 증축불가하여 도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하여 공기부족	"

나. 특별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1,773,000		
체계적인 하천정비추진	1,235,000	PQ적격심사, 입찰공고 등 제반사항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치수방재과
신재생에너지육성 및 지원추진	82,000	홍보영상 특성상 주변환경의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연도내 완성불가능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종합지원센터 건립기본계획수립	91,000	유사기능통합 연계추진을 위해 부득이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경상북도지역 에너지계획수립	65,00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위해 9.25일에 발주, 용역기간이 10개월가량 소요되어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수립	300,000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사업 착수가 '09년초로 연기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1,405,481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	1,349,481	절대공기부족 및 용역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	치수방재과
신재생에너지육성 및 지원추진	56,000	“신재생에너지를 잡아라” 특집프로그램제작 방영	에너지정책과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33,790,349	284,107,267	42,752,511	6,930,571	
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교육및홍보추진	45,000	33,189	0	11,811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지방정부구현	710,800	702,020	0	8,780	
"	정보격차해소	100,000	96,531	0	3,469	
"	전자지방정부구현	232,630	208,153	0	24,477	
관광산업과	문화관광해설사활용사업	608,960	598,444	0	10,516	
"	지역특성화상품개발	72,500	70,850	0	1,650	
"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지원	64,000	63,626	0	374	
문화예술과	기초예술진흥및교육지원	1,518,500	1,498,500	0	20,000	
체육진흥과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기금)	1,008,420	980,286	0	28,134	
"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기금)	339,570	325,341	0	14,229	
농업정책과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84,000	80,500	0	3,500	
"	창업농후견인제및농업인터인제	306,000	280,500	0	25,500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교육	85,950	79,171	0	6,779	
FTA농축산대책과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	197,454	157,845	0	39,609	
"	지역특성화교육	1,330,000	1,324,304	0	5,696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공급	6,646,671	6,646,649	0	22	
"	폐비닐수거비	517,080	514,121	0	2,959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135,000	21,465,188	0	1,669,812	
"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860,730	857,649	0	3,081	

(단위 : 천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143,789	4,141,300	0	2,490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지원)	100,638,345	100,519,721	0	118,624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지원)	6,430,002	6,426,910	0	3,092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28,639	228,177	0	462	
"	과원폐업지원	9,589,826	7,753,128	0	1,833,698	
"	생산시설현대화	395,000	387,773	0	7,227	
"	생산시설현대화(자본보조)	14,580,800	14,455,948	0	124,852	
"	생산시설현대화(직접)	33,000	31,594	0	1,406	
"	과수생산기반정비	3,932,268	3,932,010	0	258	
"	과수폐원작업비지원	953,123	931,283	0	3,840	
식품유통과	GAP시설보완사업지원	250,200	249,574	0	625,530	
축산경영과	축산분뇨처리시설	1,472,741	1,460,894	0	11,847	
"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	1,012,350	1,004,648	0	7,703	
"	학교우유급식지원	1,720,028	1,697,715	0	22,313	
"	닭뉴캐슬병예방약구입 (가축방역)	286,272	286,001	0	271	
"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가축방역)	2,068,254	2,060,973	0	7,281	
"	예방접종시술비 (가축방역)	138,000	137,272	0	728	
"	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 (가축방역)	1,428,000	1,200,911	0	227,089	
축산경영과	가축방역장비지원 (가축방역)	305,500	293,173	0	12,327	

(단위 : 천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축산경영과	공동방제단지원 (가축질병근절)	1,955,980	1,931,004	0	24,976	
수산진흥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근해)	28,362,000	0	28,362,000	0	
환경정책과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280,700	202,551	0	78,149	
독도수호대책팀	독도박물관운영지비원	800,000	778,477	0	21,523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29,560,715	29,260,295	0	300,420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4,816,400	4,705,530	0	110,870	
"	임산물유통지원	551,998	546,189	0	5,809	
"	임업통계조사	4,200	4,166	0	34	
"	조림사업(지원)	7,251,079	7,028,732	0	222,347	
"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	171,638	168,315	0	3,323	
"	조림사업(직접)	2,818,312	2,776,483	0	41,829	
"	산불방지대책	6,918,310	6,888,248	0	30,062	
"	백두대간보호	471,517	428,257	0	43,260	
"	등산문화증진	450,318	449,930	0	388	
"	산림병해충방제	6,495,236	6,406,658	0	88,578	
"	산림서비스증진	742,605	715,464	0	27,141	
"	생활림조성관리(직접)	120,000	109,000	0	11,000	
"	생정운영경비	37,180	32,012	0	5,168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전담 인력인부임	18,000	16,788	0	1,212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15,000	14,363	0	637	
노인복지과	공립치매병원장비보강	91,000	90,796	0	204	
여성청소년가족과	보육교사보수교육	143,896	135,900	0	7,996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정위탁상해보험료지원	123,823	116,330	0	7,493	
"	건전성가치관교육및체험 시설운영	75,280	75,210	0	70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44,000	42,782	0	1,218	
"	전염병환자격리치료사업	14,864	8,485	0	6,379	
"	금연클리닉사업추진(직접)	12,000	11,811	0	189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추진(직접)	100,000	94,700	0	5,300	
"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추진(직접)	52,750	43,482	0	9,268	
"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300,100	290,605	0	9,495	
"	구조및응급처치교육	24,000	23,647	0	353	
균형개발과	혁신도시기반시설 조정지원(보조)	3,853,000	27,640	3,825,360	0	
건축지적과	새주소생활화촉진	100,000	85,089	13,860	1,051	
치수방재과	재난피해자심리관리	43,664	23,659	0	20,005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지원	301,959	299,122	0	2,837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141,192	141,164	0	28	
"	민방위급수시설정비	33,150	32,552	0	598	
"	노후네트워크이중화	114,000	112,459	0	1,541	
자치행정과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운영	48,455	45,470	0	2,985	
자치행정과	강제동원진상규명 자치단체지원	481,000	455,922	0	25,078	
"	진실규명공동수행 자치단체이전	107,299	105,669	0	1,630	

(단위 : 천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자치행정과	강제동원피해자 자치단체지원	36,872	35,092	0	1,781	
새마을봉사과	도자원봉사코디네이터 및 보험료지원	32,924	29,663	0	3,261	
"	시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 및 보험료지원	632,029	629,966	0	2,063	
"	여권발급	131,738	128,156	0	3,582	
"	인력운영비	31,394	29,591	0	1,803	
회계계약심사과	인력운영비	285,281	266,847	0	18,434	
연구개발국	농업산학협동	2,400	1,653	0	747	
기술지원국	영농현장연구지원사업 (영농현장연구활동-직접)	8,800	8,773	0	27	
"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4,600	3,915	0	685	
"	농업기계훈련사업(직접)	32,800	32,792	0	8	
"	원예활동생활화시범 (농촌자원소득화)	15,000	13,536	0	1,464	
"	농촌자원소득화(직접)	2,000	1,848	0	152	
"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 (직접)	27,000	26,959	0	40	
"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직접)	62,000	61,373	0	627	
청도복숭아 시험장	복숭아연구동호회지원	1,000	990	0	10	
풍기인삼시험장	특화작목시험장연구회운영	1,000	990	0	10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36,953	36,270	0	684	
"	에이즈및성병실험실진단사업	17,477	17,136	0	340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사업	386,757	380,632	0	6,125	
"	축산물 검사	429,887	427,258	0	2,629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가축방역(보조)	29,889	20,999	0	8,890	

(단위 : 천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수산자원 개발연구소	해수열원시스템시설	572,000	502,843	0	69,157	
산림환경연구원	조림사업	155,030	150,405	0	4,625	
"	숲가꾸기	18,180	17,727	0	453	
"	산림병해충방제	464,458	419,406	0	45,052	
"	사방사업	12,148,173	12,005,349	0	142,825	
"	산불방지진입도로	123,650	119,456	0	4,194	
수목원관리소	수목원확대조성	356,058	339,485	0	16,572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소	산불진화진입도로	250,000	243,726	0	6,274	
"	사방사업	8,437,561	7,488,076	798,000	151,485	
"	산림재해복구사업	3,460,549	153,945	3,290,116	16,488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소	숲가꾸기	110,942	91,970	0	18,972	
"	산림경영계획사업	5,940	5,350	0	590	
"	사방사업	8,962,182	7,315,046	1,465,440	181,696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수해복구	3,341,223	0	2,603,872	737,351	
산림생태과학원	산림서비스증진	13,943	13,924		19	
"	산림병해충방제	14,474	14,464	0	10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	30,000	29,698	0	302	
산림생태과학원	조림사업	35,002	27,109	0	7,893	
"	숲가꾸기	68,160	65,145	0	3,015	
"	임업기술연구개발	250,000	236,752	0	13,248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소방행정과	소방장비보강	3,760,000	1,366,124	2,393,863	13	
방호구조과	소방장비보강	3,500,000	3,430,000	0	70,000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음.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 : 49,617,647천원
- 지출 결정 : 12,210,443천원
- 집행행 : 11,259,409천원
- 잔액 : 951,034천원(이월액 761,981 포함)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액 (이월액)	집행사유	해당실과
계	11,259,409 (761,981)		
의정활동전문성장화	75,100	장례비 지원 및 도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의회사무처
경제자유구역지정추진	191,186	개청분비에 따른 우리 도 부담부	경제교통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지추진	247,500	조성계획서 작성 용역	과학기술과
재보궐선거	851,130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자치행정과
새마을주민숙원사업	948,642	호우피해 복구비	새마을봉사과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8,000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지급	회계계약심사과
재해예방 및 복구추진	49,924	호우피해 복구비	수질보전과
산림재해복구 사업	(2,631,35)	호우피해 복구비	산림환경연구원 복부지원
폭설피해복구지원	26,250	폭설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비	친환경농업과
서리우박피해복구지원	606,762	서리 및 우박피해 복구	"
재해수리시설복구	125,892	호우피해 복구비	농촌개발과
가뭄대책추진(지원)	1,667,500	가뭄대책 추진에 따른 긴급지원	"
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	497,018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소독약품 및 방제초소운영	축산경영과
적조피해복구	208,034	적조피해 복구비	수산진흥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이월액)	집행사유	해당실과
문화재수해피해복구	13,905	호우피해 복구비	문화재과
재해복구	1,229,073	호우피해 복구비	도로철도과
주택건축지원사업	220,514	호우피해 복구비	건축지저과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615,29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치수방재과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1,049,463	호우피해 복구비	"
소하천수해복구사업	814,754	호우피해 복구비	"
사리도확포장사업	43,425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유지관리	34,000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구상금) 지급	"
수해복구	15,375 (498,846)	호우피해 복구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4.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해당실과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총8건)			46,127,668	296,764	296,764		
균형개발과	혁신비즈니스센터운영	307-04 민간행사보조	190,000	50,000		9. 22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산학연클러스터구축 기업 등 유치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도 분담금 소용비용으로 사용코자 전용
	혁신비즈니스센터운영	403-02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업비			50,000		
회계계약심사과	인력운영비	101-01 기본급	35,930,882	85,000		12. 11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력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사용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2,575,112		85,000		
독도수호대책팀	독도영유권 공고화홍보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630,000	122,000		9. 2	독도영토수호차원의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신설함에 따른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부족분 전용
	독도영유권 공고화홍보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83,000		122,000		
독도수호대책팀	독도영유권 공고화 홍보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508,000	25,000		9. 2	독도영토수호차원의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신설함에 따른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부족분 전용
	독도영유권강화 추진경비	202-01 국내여비	11,362		25,000		
독도수호대책팀	독도영유권 공고화홍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0,000	10,000		9. 2	독도영토수호차원의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신설함에 따른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부족분 전용
	독도영유권 공고화홍보사업	201-03 행사운영비			10,000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101-01 기본급	2,207,748	1,000		12. 11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력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사용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144,300		1,0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1 기본급	1,571,399	174		12. 11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력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사용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107,880		174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1 기본급	1,571,225	3,590		12. 11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력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사용
	인력운영비	204-03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6,760		3,590		

5.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114,230,661	90,830,782	23,399,879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1,212,996	31,012,996	200,000
예산절감	1,958,541	1,892,446	66,095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31,045,164	9,206,541	21,838,623
보조금집행잔액	10,953,692	10,494,044	459,648
예 비 비	39,060,268	38,224,755	835,513

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통 계 목	금액	사 유
계		30,305,412	
예산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51,620	집행사유 미발생
"	재정보전금	26,036,000	집행사유 미발생
미래전략산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455,000	집행사유 미발생(국비미교부)
친환경농업과	민간대행사업비	434,000	국비미배정으로 사업 미실시 (한미FTA보완대책사업→국회에서 비준되지않음)
"	자치단체자본보조	177,000	국비미배정으로 사업 미실시 (한미FTA보완대책사업→국회에서 비준되지않음)
환경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37,501	집행사유 미발생
"	시설비	2,640,100	집행사유 미발생
균형개발과	민간위탁	70,000	집행사유 미발생
새마을봉사과	민간경상보조	103,060	계획변경
"	포상금	70,000	집행사유 미발생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60,703	집행사유 미발생
관광마케팅사업단	사무관리비	70,428	집행사유 미발생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통계목	금액	사 유
계		200,000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200,00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획변경

※ 세부사업별(통계목) 5천만원 이상만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9. 6. 29(월)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I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6.12.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9. 6.25.

다. 상정일자 :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6.25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추재천

나.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58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2조 9,203억 8천 9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이 전체 89.8%인 2조 6,225억 1천 9백만원
 - 자체수입이 전체 10.2%인 2,978억 7천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2조 5,655억 2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873,724	2,920,389	2,565,524	354,865	◦ 순세계잉여금 : 114,974 ◦ 이 월 금 : 210,962 · 명 시 이 월 : 122,477 · 사 고 이 월 : 88,485 ◦ 지 방 채 상 환 : 28,929 ◦ 국고보조금잔액 : 0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48억 6천 5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109억 6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289억 2천 9백만원을 제외하고 1,149억 7천 4백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07년도 순잉여금 967억 3천 9백만원 대비 18.8%인 182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08 잉여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 계 잉여금 (C=A-B)	이월액 (D)	지방채 상환 (E)	국고보조금 잔액 (F)	순잉여금 (C-D-E-F)	2007년도 순잉여금
계	2,920,389	2,565,524	354,865	210,962	28,929	0	114,974	96,739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조 9,206억 1천 9백만원이며, 이중 2조 9,203억 8천 9백만원은 수납(99.9%)되었고, 1천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2억 2천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1천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1천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의 불납결손은 시효완성 및 학생의 자·퇴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2억 2천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1천 1백만원
 - 자산수입 3천 4백만원
 - 잡수입 등 1억 7천 5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자산수입,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및 재산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①	징결 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 납 결손 ④	미수 납액 ⑤	수납율 ③/②
	계	2,873,724	2,920,619	2,920,389	10	220	99.9
의 존 수 입	소 계	2,594,424	2,622,519	2,622,519	-	-	100.0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2,344,820	2,370,930	2,370,930	-	-	100.0
	법정전입금	220,344	221,606	221,606	-	-	100.0
	비 법 정 전 입 금	26,823	27,518	27,518	-	-	100.0
	기타이전수입	2,437	2,465	2,465	-	-	100.0
자 체 수 입	소 계	279,300	298,100	297,870	10	220	99.9
	기 본 적 교 육 수 입	29,449	29,379	29,358	10	11	99.9
	행정활동수입	271	269	269	-	-	100.0
	자 산 수 입	16,350	27,811	27,777	-	34	99.9
	이 자 수 입	10,108	17,250	17,250	-	-	100.0
	잡 수 입	1,629	1,898	1,723	-	175	90.7
	이 월 금	192,565	192,565	192,565	-	-	100.0
	지 방 채	28,928	28,928	28,928	-	-	100.0

□ 세입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보면(수납액 기준)

의존수입은 2조 6,225억 1천 9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8.3%임

-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3,709억 3천만원
- 법 정 전 입 금 2,216억 6백만원
- 비 법 정 전 입 금 275억 1천 8백만원
- 민 간 이 전 수 입 24억 6천 5백만원

자체수입은 2,978억 7천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11.7%임

○ 기본적 교육수입	293억 5천 8백만원
○ 행정 활동 수입	2억 6천 9백만원
○ 자 산 수 입	277억 7천 7백만원
○ 이 자 수 입	172억 5천만원
○ 잡 수 입	17억 2천 3백만원
○ 이 월 금	1,925억 6천 5백만원
○ 지 방 채	289억 2천 8백만원

-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의 존 수 입				
소 계	중앙정부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민간이전수입
2,622,519	2,370,930	221,606	27,518	2,465

(단위 : 백만원)

자 체 수 입							
소 계	기본적 교육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이월금	지 방 교육채
297,870	29,358	269	27,777	17,250	1,723	192,565	28,928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예산액 2조 7,778억 9천 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58억 2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2조 5,655억 2천 4백만원은 지출(89.3%)하였고, 2,109억 6천 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7.3%)하였으며, 972억 3천 8백만원은 불용(3.4%)처리 하였음.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2,777,899	95,825	2,873,724	2,565,524	210,962	97,238

◆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지출대비 구성비
합 계	2,873,724	2,565,524	89.3	100
1. 인건비	1,255,409	1,239,166	98.7	48.3
2. 물건비	82,775	77,443	93.6	3.0
3. 이전지출	181,387	176,406	97.3	6.9
4. 자산취득	381,187	183,037	48.0	7.1
5. 상환지출	64,935	64,833	99.8	2.5
6. 전출금등	855,023	824,615	96.4	32.2
7. 예비비및기타	53,008	24	0.0	0.0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160억 2천 8백만원
○ 물 건 비	45억 1천 2백만원
○ 이 전 지 출	44억 2천 1백만원
○ 자 산 취 득	133억 3백만원
○ 상 환 지 출	1억 3백만원
○ 전 출 금 등	58억 8천 7백만원
○ 예 비 비 및 기 타	529억 8천 4백만원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72억 6천만원
○ 예산 절감	16억 4천 5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577억 5천 4백만원
○ 집 행 잔 액	305억 7천 9백만원

◆ 불용액 내역(성질별)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 산 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873,724	97,238	7,260	0	1,645	57,754	30,579	3.4
인 건 비	1,255,409	16,028	3	-	11	25	15,989	1.3
물 건 비	82,775	4,512	371	-	526	414	3,201	5.5
이전지출	181,387	4,421	80	-	14	1,525	2,802	2.4
자산취득	381,187	13,303	5,406	-	387	1,557	5,953	3.5
상환지출	64,935	103	-	-	54	-	49	0.2
전출금등	855,023	5,887	1,400	-	653	1,249	2,585	3.6
예비비및 기 타	53,008	52,984	-	-	-	52,984	0	100.0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정책사업별	예산액 ①	예산 결정후 증감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 율 ⑥/③
합 계	2,777,899	95,825	2,873,724	2,565,524	210,961	97,238	3.4
인적자원운용	1,494,374	-	1,494,374	1,472,405	196	21,774	1.5
교 수-학 습 활 동 지 원	200,908	535	201,443	190,494	7,488	3,461	1.7
교육격차해소	65,566	1,600	67,166	66,142	-	1,024	1.5
보 건/급 식/ 체 육 활 동	30,963	162	31,125	27,971	2,784	371	1.2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545,875	13,410	559,285	537,960	19,652	1,672	0.3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217,649	38,766	256,415	129,767	117,229	9,418	3.7
평 생 교 육	5,601	30	5,631	5,505	32	92	1.6
직 업 교 육	1,140	-	1,140	1,049	-	91	8.0
교육행정일반	31,587	7,250	38,837	31,150	5,095	2,592	6.7
기관운영관리	65,340	34,281	99,621	37,526	58,485	3,610	3.6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65,703	-	65,703	65,555	-	149	0.2
예비비및기타	53,193	△209	52,984	-	-	52,984	100.0

라. 예 비 비

-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8백만원임.
- 그 내역은 봉화지역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복구비로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건	209	208		1	• 봉화지역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비 -봉화 춘양초, 서벽초 담장보수 -교직원 연립사택 피해보수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사.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아. 계 속 비 :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8,737억 2천 4백만원 중 2,109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임

- 명시이월 58건에 1,224억 7천 7백만원(58.1%)
- 사고이월 130건에 884억 8천 5백만원(41.9%)

◆ 이월액 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2,873,724	210,962	-	122,477	88,485	7.3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948억 8천 3백만원보다 40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된 989억 6천 4백만원으로서
- 국고 대여장학금 25억 5천만원, 사택임차보증금 15억 2천 2백만원, 잡수입 1천 5백만원, 수업료 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재산수입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94,883	4,135	54	98,964	
원어민 영어교사 주 택 전 세 권	81	-	-	81	
교원노조 사무실 임 차 보 증 금	120	-	-	120	
교 직 원 사 택 임 차 보 증 금	323	1,522		1,845	
국고대여장학금	94,148	2,550		96,698	
재 산 수 입	112	33	40	105	
수 업 료	10	10	9	11	
잡 수 입	89	20	5	104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 590억 1천 2백만원보다 1,281억 8백만원이 증가된 1,871억 2천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 지 급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차입금	59,012	△59,012	28,928	87,940	-	-	
채무부담 행위	-	187,120	191,884	4,764	187,120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969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3조 7,398억 3천 4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957억 9천 6백만원이 증가된 3조 6,783억 3천 4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된 615억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3,542,882	196,952	270,629	73,677	3,739,834
행정재산	3,482,538	195,796	244,455	48,659	3,678,334
잡종재산	60,344	1,156	26,174	25,018	61,500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147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된 2,306억 3천 2백원으로서 전기·통신기기 등 10종, 46,223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 년 도 말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 해 년 도	
	현 재 액		증		감		현 재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통신 기기 등 10 종	44,193	215,857	5,388	32,666	3,358	17,891	46,223	230,632

V. 검토의견

1. 총괄부문

-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67억 4천만원을 포함한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은 2조 9,206억 1천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9,203억 8천 9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억 3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의 89.3%인
2조 5,655억 2천 4백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3,548억 6천 5백만원으로
이월금 2,109억 6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49억 7천 4백만원,
지방채상환 289억 2천 9백만원임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은(전체 예산 대비 88.3%) 100% 수납되었고 재산
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전체 예산
대비 11.7%) 99.9% 수납됨으로서 전체 수납율은 99.9%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징수률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8년	2,873,724	2,920,619	2,920,389	99.9	10	220
2007년	2,540,012	2,565,191	2,564,964	99.9	17	210

- 도교육청의 수납액은 예산현액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에
비하여 468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2조 9,206억 1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증가하였음.

- 전체 세입 2조 9,203억 8천 9백만원에서 의존수입이 89.8%인 2조 6,225억 1천 9백만원인 반면, 자체수입이 10.2%인 2,981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자체세입 중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전체 예산 중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연도별 세입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합 계	의존 수입	비율	자체 수입	비 율
2008	2,920,389	2,622,519	89.8	298,100	10.2
2007	2,564,964	2,266,419	88.3	298,545	11.7
2006	2,422,981	2,085,450	86.1	337,531	13.9
2005	2,274,966	2,083,400	91.6	191,566	8.4
2004	2,132,264	1,896,940	88.9	235,324	11.1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2조 8,737억 2천 4백만원의 89.3%를 지출하였고 잔액은 3,548억 6천 5백만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 2,109억 6천 2백만원(이월율 7.3%), 불용액 972억 3천 8백만원임(불용율 3.4%)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08년	2,873,724	2,565,524	89.3	210,962	7.3	97,238	3.4
2007년	2,540,012	2,346,472	92.4	95,825	3.8	97,715	3.8
2006년	2,394,612	2,233,115	93.2	105,130	4.4	56,367	2.4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4%인 972억 3천 8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72억 6천만원, 예산절감 16억 4천 5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77억 5천 4백만원, 집행잔액 305억 7천 9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7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불용액 발생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기도 했겠지만, 예산의 적정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급한 여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과 수요예측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2008	2,873,724	97,238	3.4	7,260		1,645	57,754	30,579
2007	2,540,012	97,715	3.8	19,939	4	2,475	43,908	31,389
2006	2,394,612	56,367	2.3	7,618	4	1,346	18,421	28,978
2005	2,271,871	40,636	1.8	8,217			7,436	24,206
2004	2,291,179	66,429	2.9	1,607		659	38,867	25,296

- 또한,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60억 2천 8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을 비교하면 불용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교육재정의 세출내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에서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인건비 불용액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예산 현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률
			계획 변경 및 취소	정원 및 호봉 미달 영	예산 절 감	지 급 사 유 미 발 생	집행잔액	
2008	1,255,409	16,028	3	-	11	25	15,989	1.3
2007	1,183,885	12,555	-	-	-	56	12,499	1.0
2006	1,129,728	12,727	-	-	-	688	12,039	1.1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8년도 이월액은 2,109억 6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의 규모로 지난해 958억 2천 5백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58건 1,224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83건 394억 2천 4백만원보다 310.4% 증가한 것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일수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2008회계년도 사고이월 사업도 130건 884억 8천 5백만원으로 2007년도 92건 564억 1백만원에 비하여 156.8%증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의 사전 이행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년 도	예산 현액	이 월 액			비 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08	2,873,724	210,962	122,477	88,485	7.3
2007	2,540,012	95,825	39,424	56,401	3.8
2006	2,394,612	105,130	43,227	61,903	4.4
2005	2,271,871	146,808	83,527	63,281	6.5
2004	2,191,179	113,336	60,056	53,280	5.2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및 과다불용에 대하여

-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중 경북학생해양수련원건립 사업비와 경주교육청 경주여중 토지매입비의 경우 전액 불용 처리하고 청도교육청 동산초등학교 진입로포장사업비를 전액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중 경산교육청의 진량중학교 증축사업비가 전체 불용처리 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해당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비 고
학생해양수련원건립	140	0	0	140	
학 교 부 지 매 입 (경주여중)	120	0	0	120	
진 입 로 포 장 (청도 동산초)	28	0	28	0	

사 업 명	사고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비고
교 실 증 축 (경산 진량중)	80	0	0	80	
화장실증축 (경산 진량중)	71	0	0	71	

□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하여

- 교육재정은 세입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차지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면서도 일부 사업비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 예산을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 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혁신복지담당관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집 제작	13	-	-	13	
과학산업교육과	체험중심 창업교육 활성화	16	-	-	16	
총 무 과	맞춤형복지	19	-	-	19	
기 획 예 산 과	예비비	52,984	-	-	52,984	
학교운영지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330	-	-	330	
학교운영지원과	지하수개발(경주화랑고)	40	-	-	40	
학교운영지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	-	14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재 무 관 리 과	사택확충 및 전세자금조성	2,643	-	-	2,643	
재 무 관 리 과	영해지역교직원 사택매입	240	-	-	240	
교 육 시 설 과	학생해양수련원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60	-	-	60	
교 육 시 설 과	학생해양수련원 도시관리계 획 입안제안도서 작성	50	-	-	50	
교 육 시 설 과	학생해양수련원 문화재 지표조사	30	-	-	30	
화 랑 교 육 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45	-	-	45	
포 향 교 육 청	이동중 강당증축공사	1,488	-	-	1,488	
포 향 교 육 청	송라초 학교내 사유부지 매입	52	-	-	52	
포 향 교 육 청	이동중 강당증축공사 감리비	26	-	-	26	
경 주 교 육 청	경주여중 부지매입비	120	-	-	120	
경 주 교 육 청	화천분교장 사유지교환	17	-	-	17	
경 산 교 육 청	청사이전 신축 건축비	772	-	-	772	
경 산 교 육 청	보통교실증축(진량중)	81	-	-	81	
경 산 교 육 청	화장실증축(진량중)	71	-	-	71	
경 산 교 육 청	청사이전신축 감리비	68	-	-	68	

□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18쪽)에 따르면 현재 채무부담행위의 전액을 차지하고 있는 BTL사업을 추진함으로 매년 운영비 및 이자 등을 통상 20년간 균등 상환해야 하는데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불용액의 규모로 살펴볼 때,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BTL사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향후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 추진시 BTL사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정례회)

2009. 7 인쇄 / 2009.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